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인 쇄 2007년 11월 6일
발 행 2007년 11월 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 900-4300
(직통) 02) 901-2606
(팩시밀리) 02)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02 2275-5326)
인 쇄 처 천 세 (02 2272-2727)

가 격 ₩6,500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1)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0-8 93340 : ₩6,500

322.95-KDC4
325.2-DDC21

CIP2007003429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방법과 구성	6
II.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천	7
1. 1기 1860~1910: 농업이민	10
2. 2기 1910~1945: 일제 강점기	15
3. 3기 1945~1991: 해방이후 이민기	24
4. 4기 1991~현재: 탈냉전기	34
III.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	45
1. 일반적 특성	47
2. 통일관련 특성	55
IV.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6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63
2.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69
3.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비교	80
V.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85
1. 사례 연구	87
2. 정책방향: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의 역할증진 방안	103
VI. 결론	117
참고문헌	1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5

표목차

<표Ⅱ-1> 1989년 소련 내의 한인 분포	37
<표Ⅱ-2> 국가별 재외한인 변천사	44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은 전세계 150여개 국에 660만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이 660만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획득한 동포와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수이다.¹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10만명, 중국 240만명, 일본 90만명, 러시아(독립국가연합) 53만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²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6,000만명), 중국(2,500만명), 이스라엘(1,800만명), 멕시코(1,800만명), 우크라이나(1,200만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명)나 일본(260만명) 보다도 많은 수이며, 모국거주 인구(남북한)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거의 10%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분단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분단시켰다.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거주 동포는 친북한 환경에서 남한을 방문조차 할 수 없었고,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 동포들은 친남한 환경에서 북한 방문에 제약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 반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일부 재중동포는 북한의 인민군에 편입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을 지지하는 조련도 지원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 냉전 시기 남북한은 상호 대결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정책

¹ 입양과 해외결혼, 밀입국 등을 포함할 경우 재외동포의 수는 7백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광규 교수는 주장한다.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39호 (2003), p. 129.

² 러시아 전체 동포수는 18만 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는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23만명, 카자흐스탄에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³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바닷길, 땅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여, 동포사회가 분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과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재외동포사회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국가별 재외동포사회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재외동포들의 실태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데 비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는 통일의 개념을 남북한간의 통일로 인식하며,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남북간 매개의 역할로 국한시킨 데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일의 개념은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포함한다. 모국 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한민족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민족 사회의 다 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 다해미디어, 2005), p. 53.

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는 이진영 교수가 『하늘길, 바닷길, 땅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에서 시기별로 재외동포들의 통일노력을 정리한 것이다. 위의 책 참고.

이와 같이 통일의 개념을 넓힐 때,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일체의 노력, ② 거주 국가 내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적인 노력, ③ 남북 양측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체성 회복노력, ④ 남북을 연결하려는 매개적인 노력, ⑤ 한 당사자와의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내부에서 통일의 동력을 끌어내는 행위, ⑥ 실제적인 모국에 대한 투자 및 지원, ⑦ 새로운 한민족의 공동 정체성을 향한 개념화 노력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⁵

사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국가·정치 중심이 아닌 민족과 문화 중심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으로 재외동포정책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남북동수의 대표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민족공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통일과정에서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과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모색을 위해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⁵ 이진영, “재외동포의 통일노력과 재중동포의 역할,” (남북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7.6.13), p. 19.

I
II
III
IV
V
VI

2. 연구 방법과 구성

첫째, 본 연구는 재외동포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국가별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김일성저작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 등 북한 원전과 한국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자료 등 정부원전에 의존하였다. 셋째, 향후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로서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현실파악과 정책 시사점을 위해서 오사카, 교토, 알마티, 타쉬켄트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분석이다.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을 각각 재외동포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방향,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후,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결론이다.

II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천



한인 디아스포라는 1860년대 초 가난을 못 이겨 국경 넘어 간도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이민이 시작되었고, 한일합방 이후 정치적 이유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면서 확대되었다. 일제 강점 하에서는 징용과 징병으로 인해 타의에 의한 집단 거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많은 한인들이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냉전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혀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전쟁이후에는 국제결혼, 해외입양을 통한 해외유학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해외유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혹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안보불안 등으로 인한 해외이주는 계속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에서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자의반 타의반식 이주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외원정출산과 조기유학, 은퇴이민이라는 새로운 풍속도도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사회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860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이주의 배경과 정착지 등의 특징에 따라 4개의 시기로 구별될 수 있다.⁶ 제1시기는 이주가 시작된 1860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로 초기 자연재해로 인한 가난을 피해 중국, 러시아로 시작된 이주가 점차 일제의 식민지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엽에는 일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력을 위해 이주하였다. 제2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이다. 이시기는 일제 강점기간 중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주하였다. 일본은

⁶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p. 8-15.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개발을 위해 한인들의 집단이주를 실시하였으며, 태평양전쟁 발발이후에는 징병과 징용으로 인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제3시기는 1945년부터 냉전이 종식된 1991년까지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고아, 미군과의 결혼, 유학 등으로 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62년 한국정부가 최초로 해외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적인 이주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원 등의 인력송출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등 세계 곳곳을 진출하였다. 이전 시기까지의 이주가 강제이주 혹은 자의반 타의반의 이주였다면, 1970년대부터의 이주는 인구압력과 해외로부터 국내송금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장려)하에 추진되었다. 제4시기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해외동포사회와 모국, 특히 사회주의권 동포사회와 남한과의 관계가 새로이 열리며 남한정부는 이들 ‘새로운’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한의 공세적인 재외동포정책에 맞서 남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재외동포정책이 거의 실종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 지역이 확대되었고, 조기 유학, 명퇴이민, 은퇴이민 등 새로운 유형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1. 1기 1860~1910: 농업이민

한인 디아스포라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농업이민으로 시작하였다. 상당수의 한인들이 19세기 초부터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냥이나 채취로 식량을 구했고 농사의 경우에도 여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 후 돌아가는 계절형 이주에 불과하였다.

가. 중국

중국 동북지역은 청나라를 세운 만족의 발생지로서 만족은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하였으나, 청나라 정부는 1628년 비옥한 간도지방을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주와 개간을 금지시킴으로써 인구밀도가 낮고 개간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다. 1860년대 조선에서 대규모 흉년이 발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간도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1860년대 간도의 조선족 인구가 7만 7천명에 달하였다. 한인들의 인구가 급증하자 회령부사 홍남주가 중국인과 한인들 간의 마찰을 우려하여 두만강 대안지역을 한국과 중국사이의 공지라는 의미로 간도로 부르면서 이 지역의 명칭이 되었다.⁷

청나라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새로운 영토와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북경조약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만주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5년 백두산 일대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농토를 개간하였다. 중국은 조선과의 교역을 장려하는 한편, 1885년 두만강 이북의 길이 350km, 넓이 25km의 지역을 한인개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한인들의 대거 이주를 촉진시켰다. 이후 한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10년까지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간도의 조선인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다. 토지 소유권은 중국인이나 만족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은 소작인으로 일하였다. 소작인은 지주에게 60-70퍼센트에 이르는 소작료를 주었고, 지주의 머슴

⁷ 이광규,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서울: 일조각, 1994), p. 17.

과 같은 생활을 했으며, 각종 세금에 짓눌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⁸

나. 연해주

한편, 1860년 중국과 러시아간 체결된 북경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우수리강 동쪽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동쪽 바다에서 멀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러시아의 첫 이주는 1863년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러시아 자료는 말하고 있다.⁹ 지신허 마을의 첫 이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육진지방의 농민들이 월경해 오면서, 주민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1864년 30가구 140명, 1865년 65가구 343명, 그리고 1866년 100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후 높은 토지임대세 등 봉건적 수탈 등으로 고통을 받던 한인들은 1869년 조선에 발생한 대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각종 재해를 계기로 고향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정착을 위해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하자 러시아는 조선과 ‘월경자 인수에 관한 협정’을 맺기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초기에 한인 이주를 막으려던 러시아는 오히려 한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인들의 비축식량을 월경한 한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한인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거주지역도 확대되어 포세트 지역의 치진허, 안치허, 시디미, 아디미, 차피고우, 크람베, 후드바

⁸ 이광규,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p. 18.

⁹ 이들은 무산의 崔運寶와 경흥의 梁應範이 이끄는 13가구의 함경도 농민들이라는 것이 러시아와 한국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병울,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집 (2003), p. 215.

이 등에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이퐁 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프스키, 카자케비체프카, 프지로프카, 코르사코프카, 시넬리코보, 코프로프카 등에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700여명이 거주하는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의 근면성이 알려지자 동시베리아 총독이 러시아 군대에 식량과 야채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주둔 구역 내에 인위적으로 한인마을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인 마을 중 가장 북쪽에 블라고슬로브노예라는 마을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103호 431명이 거주하였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는 당시 조선인의 연해주 유입이 얼마나 급증하였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를 서두른 것은 연해주로 몰려드는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 입장에서 동북부 지방의 농민 이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¹⁰ 수교 조약에 의하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3종으로 분류되었다. 제1종은 1884년 이전 러시아에 이주한 사람으로 이들에게는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영주를 허용하였다. 제2종은 1884년 이후 러시아에 입국한 사람으로 허가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3종은 러시아를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이 8,500명, 국적을 갖지 않은 한인이 12,500명, 계절 노동자가 3,000명이었다. 1880년대 러시아가 한인들의 이주를 막은 것은 1879년 유럽의 오데사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가 열려 유럽인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 들어 러시아는 기존의 한인 이민 억제정책을 바꾸어 한인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변강의 식민지화에

¹⁰ 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서울: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 물결운동, 2004), p. 90.

한인들을 활용하고자, 제1종에 속하면서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강제 귀화를 명하고 토지를 분배하였다. 제2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국기한을 연장해 주고 1종에 편입하였다. 이후 2종에 속하는 사람들 중 러시아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였다.¹¹

이와 같이 한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총독들이 있는 반면, 운테베르겔과 같은 총독은 한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그는 한인들이 러시아인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한인들이 러시아에 충성을 바칠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그는 한인들의 귀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1종에 속하여 이미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인들에게는 관유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어장과 광산에 근무하는 한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을 원호(元戶)라 하고, 귀화하지 않은 한인을 여호(余戶)라 하였는데, 원호는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한 반면, 여호는 토지가 없이 소작인으로 일을 하거나 광산이나 어장, 산림 벌채장에서 일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¹²

당시 한인들 중 러시아에 귀화자격은 있지만 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귀화하여 거주허가증을 얻는데 은화 20루블이라는 거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¹¹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49.

¹² 위의 책, p. 50.

2. 2기 1910~1945: 일제 강점기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의 합병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 성격의 이주가 나타났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기 이전의 만주와 연해주 이주가 순수 농업이민이었다면, 1905년을 기점으로 한인들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거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의 수탈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선 내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농민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다.¹³ 물론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민의 수는 제한적이었으나, 당시 이주민들 중 많은 수가 정치적 망명객이었으며 농민들도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가. 만주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비밀협정에서 만주를 남북으로 이등분하여 남만주를 일본의 세력 하에 두기로 합의하고, 재빨리 도독부(都督府)와 남만철도주식회사(南滿鐵道株式會社)를 설치한데 이어 1907년 용정에 조선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설치하였다. 남만주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09년 중국과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은 일본에 용정촌 등을 통상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용정에 총영사관을 두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조선과 중국의 국경으로 하고 한인의 두만강 이북에서의 개간과 국경의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다.¹⁴ 이후 만주의 한인은 계속 증가하여

¹³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p. 50.

¹⁴ 이광규,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p. 20

1921년 45만 명을 넘어섰다. 일제 강점을 벗어나고자 국경을 넘은 한인들은 일본에 직접적인 항거를 하기보다는 2세들에게 민족교육을 통하여 훗날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다. 1906년 이상설, 이동녕, 여준 등이 용정에 서전의숙(瑞甸義塾)을 시작으로 수많은 민족학교가 세워져 많은 한인들을 교육시켰다.

한편 국내에서 3.1운동에 힘입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일대에서 대한독립단을 시작으로 항일 의병이 조직되고 무장 독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동간도 국민회 산하의 대한독립군, 대한군무도독부를 비롯하여,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대한의용군, 의군부, 대한독립청년단 등이 조직되었고, 이들 단체가 연합하여 1920년 실전현 홍통구(紅通溝), 향로구(香爐溝)에 광복군 사령부를 두었다. 항일 무장 독립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과 같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미 만주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영향력을 확대한 일본의 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독립군 내부의 균열 등으로 항일 무장투쟁이 크게 위축되면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은 만주를 떠나 1940년 중경으로 옮긴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으로 편성된다.

민족주의 항일투쟁과 달리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과 협력 하에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거나 조선의용군으로 활동한다. 이 중 김일성도 1932년부터 1941년까지 만주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 1로군 2군 6사 사장을 하였는데, 당시 6사의 병력은 약 2백명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후에 1군과 2군이 3개의 방면군으로 편성되면서 김일성은 1938년 11월 2방면군 군장을 하다가 1941년 소련으로 탈출하였다.¹⁵ 김일성은 1945년 9월 9일 빨치산 동료 안길, 이동화, 오진우, 최현, 박성철, 김책, 김일, 유성철 등 72명과 함께

소련 함정을 타고 원산항을 통해 입국하였다.¹⁶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만주국을 세우고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거 이주시켰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계급갈등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1936년 이후 4만여 가구 10만 여명을 이주시켰으며, 조선인에 대해서는 매년 1만 가구를 이민시킨다는 계획 하에 1937년부터 1941년까지 2만 4천 호를 이주시켰다.¹⁷ 1930년 60만명이던 조선족 인구는 1945년까지 만주지역에 조선족 인구는 1백 65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나. 연해주

1905년부터 의병운동 단체가 조직되고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다. 1906-1907년 지신허 마을의 총인구는 1,370명에 이르렀고, 1914년 이 일대 지역까지 합하여 2,000명에 달하였다. 지신허 마을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서 초기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각지로 진출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들의 집거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가들이 집결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구한말 13도를 대표하는 13도의 군을 조직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러시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명회(聲明會), 권업회(勸業會) 등을 조직하였으

¹⁵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3-27.

¹⁶ 원산항을 통해 입국한 빨치산의 수는 정상진이 유성철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4년 5월 6일.

¹⁷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62.

며,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연해주와 만주일대에서 항일 의병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신한촌이었다. 신한촌은 1920년 4월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¹⁸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곳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¹⁹

당시 연해주에는 11개 학교가 있었다. 창동, 의동, 신흥의숙, 인동의숙, 모형의숙, 수청, 급당서숙, 흥원, 명동, 동흥 등이 있었고, 신한촌에 만도 계동, 신동, 세동 등 3개 학교가 있었다. 언론으로는 『해조신문』, 『大同共報』, 『대양보』,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1915년까지 폐간된다.

신한촌은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호열자라는 이유로 철거하여 시내에서 떨어진 북부 구릉지를 한인 주거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되자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는 홍군과 백군의 전투가 이어졌다. 1918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인 1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4월에 육군 전투부대를 상륙시키고, 백군을 후원한다. 백군이 홍군인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을 구속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홍군은 니콜라예프스크 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과 일본인을 습격하여 전멸시킨다. 일본군은 다시 4월 4일 대대적인 보복전을 감행하는 데, 이 때 신한촌도 습격을 당하게

18. 이밖에도 미국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 지방총회가 안창호, 이종호, 신채호 등에 의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르쿠츠크 중심의 자바이칼의 수도인 치타로 옮겨 1911년 소집된다. 1915년 해산될 때까지 이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19.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국시민사회의 역할,” 『동북아시아, 한러관계와 고려인』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2004.10), p. 40.

된다. 일본군은 수백명의 한인을 무차별 사살하고 학교와 신문사를 소각하는 등 신한촌을 쑥밭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인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한다. 당시 크고 작은 유격대 36개에 3,7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⁰

소비에트는 1920년 극동지역에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을 건립하여 일본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 군대의 철수 조건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볼셰비키 선전을 하지 말 것과 극동의 한인이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하자 소비에트는 한인들에게 약속한 토지의 분배를 파기하고 한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킨다. 토지 없는 한인들은 북위 48도 5분 이북인 하바로프스크와 블라고베센스크 구역으로 이주시킨다. 극동 소비에트에서는 한인에게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였으며 한인과 러시아인의 혼합 집단농장 콜호스를 금지하였다.

1924년 한인사회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기 전까지 18만 여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에 거주하였다. 한인들은 주로 농업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일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에 종사하였다. 한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던 하한스크(당시 포씨예프스크)에서는 한국어로 행정업무가 처리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극장,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 세워졌으며 국경지역에는 380개의 한인보통학교와 한인 콜호츠와 공장 노동자를 위한 대학 예비학교가 있었으며, 한국어판 신문 7가지와 잡지 8가지가 발행되는 등 한인 사회가 번창하였다.²¹

²⁰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62.

²¹ 김태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1998), p. 57.

그러나 1929년 중·소간의 무력충돌로 연해주 남부의 하산스키 한인 마을 162개가 이미 사라졌으며, 강제이주 당시 44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지신히 마을 역시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와 전러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극동주 국경지대의 한인추방에 관하여”를 채택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소련 인민위원회가 “한인 추방에 대하여”를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의해 극동 지역에서 한인 17만 2천명이 국경지역을 떠나 내륙으로 강제 이주되었다.²²

강제이주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일까지 포세트 구역과 그로테크브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하고, 10월 15일까지는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한인 강제이주 이전에 한인 지도자 2,500여명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제이주를 총지휘한 내무성 극동분국의 총책임자 인류슈코프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한인 강제 이주를 완수한 후 스탈린의 숙청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우려하여 1938년 6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한인 지도자들은 노동수용소나 감옥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²³

한인들은 먼 곳으로 이주할 것이니 2-3일치의 식량을 준비하라는 통지를 느닷없이 받았다. 이동 준비기간은 일주일, 심지어 2-3일 정도 주어졌다. 이동을 통보한 후 여행 증명서를 압수하고 마을간 이동을 금지하였으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기차를 타도록 하였다. 가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놓고 갔으며, 이를 담보로 새 이주지

22.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1999), p. 368.

23. 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p. 58.

에서 토지와 가옥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주 후원금으로 일인당 150루블을 받았으며, 각 호당 370루블을 받았다.

한인들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채 기차에 올라, 한달 이상을 화물칸에서 보내야 했다. 추위와 용변문제, 식사문제, 물 문제 등 기차 안은 생지옥과 같았다. 그 안에서 해산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겁탈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희생이 많았다.

다. 중앙아시아

1937년 9월 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가 완료되었다. 카자흐스탄 남부 우쉬토베에 처음으로 한인들이 내려 토굴을 파고 살기 시작하면서,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이민사가 시작되었다.²⁴ 기록에 의하면, 36,422가구 171,781명이 124칸의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는데, 이중 76,525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95,256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고 한다.²⁵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인들은 사막지대, 벌판, 강가, 원주민 마을 등 여러 곳에 나누어져 하차하였다. 원주민 마을에 내린 사람은 헛간이라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토굴을 파거나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겨울을 지내야 했다. 그러나 독거미와 독사, 갈대숲의 모기 등과 추위 등으로 인해 첫 겨울에 대부분의 어린이와 노인들이 사망하였다. 한 기록에 의하면 1937년에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한인 중 7천명이 사망하였고, 1938년 4천 8백 명이 사망하

²⁴ 알마티 북부에 위치한 우쉬토베 벌판에는 한인들의 최초 정착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²⁵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10호 (2001), p. 142.

였다.

강제이주로 인해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고유문화 및 모국어를 상실하였다. 가축과 농작물, 주거지 등 재산의 손해와 민족적 상실감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은 강제이주를 실시하면서 한인 가구당 약 6,000루블 정도 되는 이주비용을 책정하여 지역별로 할당했으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유용하고 실제로 이주 한인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소련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재배 농장에 한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한인에 대한 정착금과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한인들에게 주어진 물건과 이주비용을 자신들이 유용하고 한인들을 임시건물, 창고, 회교사원 등에 입주시켰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일종의 억류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유목지대로 농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와 목화재배에 크게 성공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많은 노력영웅을 배출하기도 하고 유명한 꼴호즈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꼴호즈로는 타쉬켄트 근교의 김병화 꼴호즈를 들 수 있다. 김병화 꼴호즈는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교육 시설을 갖추어 많은 한인 인재들을 육성하였다. 꼴호즈의 성공으로 김병화는 두 차례 노동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라. 일본

태평양전쟁(1940-1945)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만주이주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으로 이주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인들의 일

본이주는 개화이후 서구문물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1907년 동경유학생이 5백 명에 달하였다. 이후 한일합방이후에도 일본이주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조선에서 노동력을 모집하면서 일본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 3,630명이던 재일 조선인수는 1920년 2만 7천명을 넘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토지조사사업 후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로서 아무런 기술도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으며 일본어를 하지 못하였다.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였으며, 더럽고 게으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혐오감이 커지는 가운데 1923년 관동 대지진시, 조선인이 방화와 주요시설 폭파, 우물에 독약 투여를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6천 명내지 2만 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테러로 살해되었다.

조선인 테러 이후 주춤하던 이주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년 조선인의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1934년 50만 명에 달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고 1939년 7월 노동력 동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동년 9월 발표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 취급 요강’에 의거해 조선인을 광산 등으로 강제로 끌고가기 시작하였다.²⁶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철강, 토목 등 모집 분야와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징용된 조선인 수는 724,787명이었다. 이외에도 군인과 군속으로 징병된 37만 명을 합치면,²⁷ 전쟁기간 중 조선에서 끌려간

²⁶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일본,” 김인영 편,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 (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민족통합』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001), p. 107.

²⁷ 이 수는 군인 229,934명과 군속 145,010명을 포함한다.

수는 1백만 명에 달한다. 해방당시 일본내 한인은 2백 3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마. 미국

이 시기 아시아를 벗어난 이민도 있었는데, 최초의 미국이민은 1903년 1월 102명의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를 실은 이민선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의 남자들로 짧은 기간 내 돈을 벌어 귀국하려는 임시체류자들이었다.²⁸ 한인의 하와이 이주는 1905년 일본의 저지로 중단될 때까지 총 7,226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10년부터 이들의 초청에 의해 한국에서 1천여 명의 신부들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하와이를 벗어나 본토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노동자 이외에도 한일합방 이후 정치적 목적의 이주가 있었으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의 유학생이 이주하였다. 해방당시 하와이에 6천 5백명, 그리고 미국 본토에 3천명 가량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3. 3기 1945~1991: 해방이후 이민기

해방당시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중국, 일본, 소련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중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들은 해방을 맞아 대거 귀국하면서, 재외동포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과 소련의 재외동포사회에는 모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이주가 없었으며, 일본 동포는 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와 ‘귀국사업’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미

²⁸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p. 206.

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 한인들의 이주는 계속되었다. 1963년 경협 차관의 확보를 위해 광원 8천명, 간호사 1만명이 서독으로 이주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럽이민이 시작되었다. 1965년에는 미국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미국행이 급증하였으며, 1970년대엔 월남전을 계기로 동남아 이민이 시작되었다.

본 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변화가 활발하였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1960년대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중국

해방당시 1백 65만 명에 달하던 중국내 조선족 수는 대규모 귀국하기 시작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시 11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해방 전까지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모두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였으나, 해방 이후 중국에 남은 사람들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복속됨으로써 모국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²⁹ 정치전해, 경제문화를 향수하는 것이 자기 조국이라는 레닌의 말대로 이들은 공산주의사상의 조국관을 갖게 되었다.³⁰

이후 남북 대결구도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게 되었다. 중국 조선족은 대부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조선의용군에 참가하여 중국공산화에 일조하는 등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친북적이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만명이 인민군 혹은 중국의용군으로 참가하였고, 전후복구사

²⁹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p. 65.

³⁰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p. 17.

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주 초기부터 중국 내 조선족은 문화적 정체성은 뚜렷이 보존하여 왔다. 조선족은 민족마을을 건설하고, 신문, 잡지, 방송 등 우리말 사용을 지속되었으며, 풍습과 전통 역시 유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조선족은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을 평등하게 다루는 중국의 우호적인 소수민족 정책 역시 조선족의 정체성 유지에 일조하였다. 1952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수립되었고 1958년에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수립되었으며, 조선족이 행정조직의 간부로서 일정비율 등용되었다. 조선족들은 높은 교육열로 중국내 가장 낮은 문맹율과 가장 높은 교육보급율을 보였다. 1952년 조선족 지역에 초등교육이 보급되었으며, 1958년에는 중학교교육이 보급되었다. 중국 최초의 민족대학으로서 연변대학이 1949년 연길에서 개교하였고, 1958년 중국의 첫 번째 농민대학인 새벽농민대학이 용정에 세워졌다.

나. 일본

1945년 재일 조선인은 2백 3십만명으로 추정되나, 해방과 함께 많은 한인이 스스로 귀국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약 8십만명이 귀국하였으며, 1946년 말까지 575,000명이 귀국하였다. 이후에도 규모는 줄었으나 귀국이 계속되어 1948년 정부 수립시까지 60만명만 남고 대부분 귀국하였다. 귀국하지 않고 남은 한인들은 일본생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는 한국내 친척이나 연고 등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³¹ 전후 일본내 실업이 급증하자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행상, 암매, 밀조, 담배불법매매, 양돈, 폐품수집 등으로

³¹ -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p. 112.

생계를 유지하였다. 자연히 한인들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잔류한 교포들은 95%가 남한출신으로 이중 경상도 출신이 65%, 제주도 12%, 전라도 11% 등이었으며, 이북 출신은 1.5%가 채 안되었다. 그러나 한국적은 7.4%에 불과하였고, 조선적이 92.5%였다.

재일한인들은 1945년 10월 귀국, 재산관리, 생활상담, 국어학습 등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결성하였으나, 조련이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차 정치화·좌경화되기 시작하였다.³² 조련의 좌경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1월 ‘조선건국축성청년동맹’(건청)을 결성하면서 좌우로 분열되었다. 건청의 활동은 부진하였고 1946년 2월 신조선건설동맹을 거쳐 재일조선인거류민단(민단)을 조직하였으나, 조련에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한 1948년 이후 민단은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을 개칭하면서 제2민단 선언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³³ 1950년대 한국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신국가보안법, 조봉암사건 등에 대하여 내부의 파벌과 분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민단 지도부는 대부분의 한인과는 달리 중산층 출신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점령군 사령부는 재일 한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승전국 국민의 지위를 요구하는 재일 한인들의 요구를

³² 조련의 고문으로 추대된 김천해는 일본공산당의 중앙당 정치국원이며 조선인부 부장으로, 조련은 김천해를 통해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39호 (2003), p. 132.

³³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p. 116.

목살하고 평화협정시까지 일본 국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일부 재일 한인들의 일본공산당과 국제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점령군 사령부는 한인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종료되었으며, 재일 한인들의 일본국적도 자연히 소멸되고 외국인이라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재일 한인들의 이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응당하나, 단지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대해 출입국관리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그쳤다.³⁴

한편, 조련은 1949년 9월 일본정부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고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과 재일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 등으로 변신하였고, 1955년 일본공산당과 단절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한덕수의 노선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민단과 달리, 조총련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금지원으로 민족교육에 주력하였다.

조총련은 자생적 교포단체라기 보다는 조선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1956년 조선노동당 3차당회에 참석하여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후 1961년 4차, 1980년 6차당회에 참석하였다. 1967년 12월 제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한덕수 등 총련 의장단 6명이 처음으로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58년 8월 해방13주년 기념식에서 조총련은 전후복구사업에 재일 한인이 기여하기 위해 복송을 제의하였고, 1959년 10월 복송이 시작되었다. 1959년 2,942명으로 시작된 복송은 1960년 49,036명, 1961년 22,801명에 이르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실정이 알려지면서

³⁴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p. 112.

1962년 3,497명으로 급감하였다. 1967년 4월 일본 정부가 내각결정에 의해 '귀국사업'을 중지할 것을 발표한 이후, 3년간 재일 교포의 북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1971년 북송이 재개되었으나, 대규모 북송은 더 이상 없었다. 1959년부터 1984년 북송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총 93,339명의 재일한인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이후 한국국적의 취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을 기점으로 한국적이 조선적보다 많게 되었다

다. 중앙아시아

1937년 중앙아시아에 끌려온 후 맨 몸으로 토굴에서 생활을 시작한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성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러시아인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³⁵ 고려인 2, 3세대들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하면 높은 교육수준으로 의사, 기술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직에 진출하였다.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시 고려인들은 이삿짐을 포기하면서도 「선봉」 신문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가져와서 알마티에서 「레닌기치」라는 제호로 신문을 창간하였다.³⁶ 「고려극장」 등을 설립하는 등 연해주의 고려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련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들은 고려인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한국어 사용하였으나, 이것마저 러시아어 습득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가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된 것이 한인

³⁵-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 650명 중 한인이 139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³⁶- 『고려일보』 남경자 편집장과의 인터뷰,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7년 7월 16일.

들로 하여금 러시아어를 빨리 습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사회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목문화를 멀리하고 철저히 러시아화 되었다. 고려인들은 현지어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언어도 배우지 않았다. 공식 언어가 러시아어인 상황에서 한인들은 현지어를 배울 필요성도 없었고 현지어와 현지인들을 무시하기까지 하였다.

해방후 고려인들은 소군정에 복무하면서 북한정권수립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정권수립 이후에도 당, 정, 군의 각종 요직을 차지하면서 북한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련에서 차출된 고려인들은 총 428명이었는데, 20명 정도가 부상급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소련파 중 최고위직은 허가이로서 본명은 허 알렉세이 마노이치였다. 소군정 시절 각 부서의 1인자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이나 다른 파벌에서 차지하더라도 소련파들은 각 부서의 2인자로서 군정 당국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보고하는 등 실세라고 할 수 있었다.³⁷

소군정은 북한에 진주한 후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한국인의 행정부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소련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로마넨코 사령부라 불리는 소군정 본부에 한국인들이 오게 하였다. 소련파 4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43인조’는 수시로 로마넨코 사령부에 모여 정치문제를 토의하는 등 소련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⁸

그러나 1956년 소위 종파사건 이후 소련파는 숙청되거나 중앙아시아로 망명하여 정치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스탈린 사후 변화를 맞게 된다. 1953년 스

37. 최국인의 증언,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4년 5월 5일.

38.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7), p. 406.

탈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1956년부터 고려인의 정치적 권한 정지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강제거주가 해제되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미 새로운 정착지가 된 곳에서 다시 떠나지 않았으나, 일부는 새로운 삶을 찾아 소련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유입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라. 러시아

1956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이동을 계기로 러시아 고려인 사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 떠난 고려인들 일부는 원 고향인 극동으로 향하였다. 이들이 연해주로 오는 길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정착하기도 하고, 연해주까지 돌아와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는 ‘큰땅치’라 한다.

1956년 중앙아시아 역류가 해제되기 전에도 연해주에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중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연해주에 직장을 배정 받아 근무하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이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사할린에는 강제 징집된 5만 명의 한인들이 남게 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위해 파견되었다. 또한 사할린의 젊은이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브스크로 유학을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부모들이 연해주로 따라오게 되었다. 1945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사할린 징용자들은 1972년부터 소련의 영주권을 얻기 시작하였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을 연해주에서는 ‘화태치’라고 한다.

또 다른 부류의 고려인은 북한출신들이다. 러시아는 1946년부터 북한출신들에게 극동지역에 노동허가를 주었고,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별목, 광산, 어업, 건축 등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중 일부는 돌아가지 않고 극동지역에 체류하였다.³⁹ 1960년대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소련의 별목, 건설, 농업에 노동력을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3월 북한은 소련과 임업협정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별채량의 35-40%를 배당받기로 하였다.⁴⁰ 이들을 ‘북선치’라고 한다. 1991년 소련해체 이전까지 고려인 거주자는 약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후반 거주이전의 제한이 철폐되면서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던 고려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진출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된 2세대들은 농업 뿐만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진출을 한다. 1960년대 초부터는 농사,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농업목적의 이주자들은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 1950년대 후반 소련 당국은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부유한 꼴호즈와 그렇지 못한 꼴호즈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부유한 꼴호즈의 경영을 악화시켰고, 고려인들은 꼴호즈를 떠나 고본질이라는 계절농을 위해 타지로 이주하게 되었다.⁴¹ 고본질은 3월부터 10월까지 소속 꼴호즈를 떠나 타지역에서 수박, 양파 등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판매한 후 돌아오는 계절농이다. 고본질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수익을 내는 데 대한 위험부담도 있었으나 고려인들과 꼴호즈간의 내부거래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즉 정상적인 운영으로 국가의 요구량을 맞출 수 없는 꼴호즈가 계절농을 하는 고려인에게 농기구와 농지를 임

³⁹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47.

⁴⁰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8177850>> (검색일: 2007.4.12).

⁴¹ 임영상, “고려인과 고려인 이야기, 문화콘텐츠,”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어제와 오늘』 (문화관광부 주최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70주년 기념 세미나, 2007.7.5), p. 36.

대해 주고 이들의 높은 수익을 통해 목표량을 채우는 방식이다.

고본질을 통해 재산 축적을 한 한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였다.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우크라이나 등지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구소련에서 후르시초프의 소수민족 보호정책은 브레즈네프의 등장과 함께 다시 보수화되었다. 브레즈네프는 1972년 소비에트 형성 50주년에 여러 민족의 차이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단일 소비에트인’화를 공산당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동화정책에 의하면 소수민족의 다양성과 민족적 요구는 반 소비에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미국

한편, 해방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이민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 하면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을 하고 이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64년까지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이주한 수는 6천명에 이르며, 2000년까지 10만 명에 달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시작한 해외입양은 2002년 15만명에 이르며 이 중 10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세 번째 부류는 유학생이다. 해방이후 1965년까지 6천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영주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유학과정에서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의 저학력층 위주의 미국이민에서 탈피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종의 중산층이 미국으로 이주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965년

부터 1973년까지 의사 3천명, 간호사 2천 5백명, 약사 8백명, 치과의사 1백명 가량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해방 이후 국제결혼, 유학생, 의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한 가족들에 의해 초청받은 것이다. 1970, 1980년대 연 3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주하였다. 미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970년 69,150명이던 한인의 수가 2,000년 1,076,872명으로 증가하였다.

1965년 전문직 이민이 시작되면서 84%에 달했던 화이트칼라의 이주 비율은 1970년 81%, 1975년 65%로 차차 낮아져, 1980년 초에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비율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⁴² 1970년대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전문직 직종의 이민이 제한되고, 이들의 가족이 초청에 의해서 이민하는 현상을 반영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으로의 이주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기술직의 중산층 가정의 보다 나은 삶과 자녀들의 교육을 찾아 떠나는 자발적 이민이었다. 그러나 1970, 1980년대 한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과 이민 생활의 고충은 이들 중산층들의 이민을 감소시켰다.⁴³

4. 4기 1991~현재: 탈냉전기

가. 중국

교포사회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부터이

⁴²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p. 213.

⁴³ 많은 이민자들이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면서, 장시간 영업으로 인한 유체적,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의 책, p. 214.

다.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가 수교하면서 재중, 재러 교포사회가 처음으로 남한과 접촉하게 되었다. 특히,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던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1991년 한중수교로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수교 이후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연해주를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교포사회를 만나게 되었고 곧 이어 한국인들의 투자는 교포사회를 변화시켰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조선족 사회에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선족은 초기 친척 방문으로 시작하여 산업 연수, 노무송출, 결혼 등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고 있다. 대부분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나 몇 년간 한국에서 고생하여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갖고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산업에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다. 2003년도 한국으로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송금된 금액은 6억 5천만원으로 이는 연변자치주 재정수입의 40%에 해당한다.⁴⁴

한국으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은 중국 내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미 중국 조선족 사회의 도시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촉진시켰다.

조선족 집거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욕망과 함께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인한다.⁴⁵ 특히, 조선족 집거지역을 떠나는 조선족의 대부분이 20-30대 여성으로, 농촌지역의 많은 조선족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여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낮은

⁴⁴ 배정호 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82.

⁴⁵ 허명철, “중국조선족 집거구문제에 대한 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2000), p. 227.

인구출생율과 함께, 흡연, 음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은 동북지방 조선족 집거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조선족 사회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높은 산하제한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는 학생수와 교사수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민족교육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나. 중앙아시아

1950년부터 조금씩 타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1989년 소련은 구공화국의 주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연방법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자 이에 반발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면서 소련해체는 가속화되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혼란을 거듭하던 소련은 10개 공화국이 1991년 각기 주권을 보유한 채 관세없는 경제동맹과 집단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동안 잠복해 있던 민족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라 소련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러시아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인을 각 공화국으로 이주시켜 러시아인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러시아 언어, 문화, 예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각 공화국에서 러시아인은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화 정책은 각 공화국내에서 오히려 민족정서를 자극하고 반러시아 정서를 고취시켰다. 이와 같이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이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분출된 것이다.

소련 해체 당시 소련에는 45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수는 소련내 127개 민족 중에서 28번째로 많은 인원이나, 이들은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였다. 자치주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으로는 폴란드(110만) 다음으로 많은 수이나, 폴란드인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표Ⅱ-1> 1989년 소련 내의 한인 분포

공화국	한인명수	공화국	한인명수
러시아	107,051	몰다비아	269
우크라이나	8,669	라트비아	248
백러시아	638	키르기스	18,355
우즈베크	183,140	타지크	13,431
카자흐	103,315	아르메니아	29
그루지야	242	투르크멘	2,848
아제르바이잔	94	에스토니아	202
리투아니아	119		

출처: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112.

그러나 소연방 해체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중앙아시아 현지의 회교민족주의 부활에 따른 이민족 차별 경향, 주요 민족의 자민족어 회복에 따른 언어 문제와 이에 따른 실직 현상, 독립국가 형성 이후 경제난 등을 꼽을 수 있다.⁴⁶ 러시아인이 차지하던 주요 공공 직책이 현지인에게 넘어갔으며, 꼴호즈 등의 지배인 자리 역시 현지인에게 주어졌다. 심지어 한인이 다수인 꼴호즈에서까지 한인들이 밀려났다. 한인들은 현지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무시당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의 박탈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꼴호즈와 소프호스가 붕괴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⁴⁶ 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한민족간 교류협력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2002), p. 150.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회교민족주의와 타지키스탄의 내전은 주요 배출요인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어(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회교 사원이 복원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등 고려인들을 문화적, 민족적으로 압박하자,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절반 정도가 연해주를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연해주는 고려인들의 조상이 거주하던 제2의 고향이라는 정서적인 이유가 있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해주 정부가 재이주 고려인을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는 기후가 춥고, 경제적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독립 초기 연해주로의 이주행렬이 중단되고 가까우면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카자흐탄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불가리아 주변의 남부 러시아, 남우랄지역의 오렌부르크, 모스크바, 쟁트 빼제르부르크, 예가테린부르크, 첼랴빈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그라스노야르스크, 이루구츠크 등지로 떠났다.

다. 연해주

1991년 소연방의 해체이후 강제이주 한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3년 4월 1일 『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대한 연방법령』으로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령에 따르면, 강제이주와 강제이주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강제이주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고려인은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은행대부, 취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법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2002년 7월 15일 새 법령이 공포되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강제 이주된 개인은 개별적으로 재판을 제기하여 탄압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물론 탄압사실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연금혜택(한 달에 92-150루블 가산), 전기·물 사용료 50% 할인, 일년에 한번 러시아내 왕복 기차표 제공, 무료 전화가설(100달러), 석탄 5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1993년 법령은 이주 1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2년 법령에 따르면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1956년 말까지 이주지역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956년 타지역으로의 이주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1956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강제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다.⁴⁷

1991년 연해주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초반 800만 명을 넘던 인구가 낙후된 경제와 자연환경 등으로 유럽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극동지역 내에서도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경제위기와 외국 투자규모의 축소로 인해 농업생산물과 생필품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1996년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여 10-15%의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인구의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외로부터의 노동이민 내지 사업을 위한 유동인구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연해주의 노동인력 부족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유입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외에도 다양한 한민족 집단이 연해주에 유입되었다. 우선 연해주 노동력의 부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노동

⁴⁷ 김 류보비 이와노브나 변호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김변호사(여)는 소련 해체전 경찰간부로 연해주에 왔다가 소련해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번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다. 인터뷰는 「새마을 운동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력 유입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 지역의 인구과밀과 실업에 따라 러시아로의 유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중국 유입 인력의 70-80% 가량이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중국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한·러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들은 주로 기업인, 상사직원, 공관원들로 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등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수는 많지 않지만, 농업과 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해주에 현재 52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무역업이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야쿠르트 등 15개사가 있으며, 제조업이 성한물산, 세신 등 30개사가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류업이 많으며 그 밖에 현대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이 있다.⁴⁸

농업 분야에는 고탐상사, 대아산업,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본부, 대한주택공사, 남양알로에, 농촌지도자, 발해영농, 신성산업, 경기농업경영인단체 등 11개 기업 및 단체가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50년간 100헥타르(ha)에서 수천 ha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벼, 메밀, 옥수수, 콩, 채소, 버섯 등을 재배한다.⁴⁹

또한, 1992년 한국은 나호트카 항구에 100만평의 토지를 49년간 차관하여 공단을 조성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00년 한국 토지공사 나호트카 행정위원회와 “기본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⁴⁸ 연해주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에 6-7개사, 카차트카에 3-4개사, 사할린에 10여개사, 이르쿠츠크에 1-2개사가 진출해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자료집』 (서울: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2004), p. 96.

⁴⁹ 동북아 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자료집』, p. 97.

이곳에 입주할 업종은 수산물, 목재가공업, 섬유류, 전자 그리고 기계류 등으로 한국기업 100개사, 러시아 기업 200개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196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노동력 송출이 계속되고 있다. 소련해체 이후 운송비의 급등으로 별채량이 줄어들고, 별목공의 인권문제 및 탈출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천명 수준의 별목공이 있다. 이 밖에도 연해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해주 극동대학교에 북한인들이 개혁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해주 정부는 1만 천명의 해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북한에게 3천명의 인력송출 쿼터를 주었고, 이중 천 5백-2천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주에도 각각 2천 5백명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러 관계 차원에서 연해주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해주는 남을 도울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북한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북·중 관계와 같이 북한과의 국경무역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

라. 일본

조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재일 한인사회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합운동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되자, 재일 한인사회도 단일 응원단을 구성하여 응원에 나섰다. 이를 전후로 「원 코리아 페스티벌」, 「한겨레 음악회」, 「원 코리아 바둑대회」 등 민단과 조총련의 화합과 교류

를 위한 공동행사가 이어졌다.⁵⁰ 2001년 조총련의 한덕수 의장이 사망 후 취임한 서만술 의장은 6.15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남한측과의 교류와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조총련의 변화는 총련내부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일본의 경제침체로 총련의 주력군인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총련계열 신용조합들이 통폐합되고, 북일무역의 주력회사인 동해상사가 부도위기를 맞는 등 총련의 기반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동포들의 단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3년 이후 총련의 요청에 의해 총련동포의 고향방문이 시작되었다.

재일동포 사회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분열된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은 남북의 분단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화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가 필수적이다.⁵¹

2006년 5월 17일 민단의 하병옥 단장과 총련의 서만술 의장은 8·15 경축행사 공동개최 등 6개항의 화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5주만인 7월 6일 민단 산하단체와 지방본부의 반발에 의해 민단은 5·17 공동성명을 백지화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와 납치자 문제로 일본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방본부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중앙본부의 결정에 기인한다.⁵²

총련은 2007년 부실채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중앙·지방본부 소유

⁵⁰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p. 139.

⁵¹ 위의 글, pp. 145-146.

⁵² 민단과 총련의 공동성명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개입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동성명에 반대하는 민단측의 이유 중 하나는 총련과의 화해가 일본인들에게 민단과 총련을 한통속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들이 대부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⁵³

마. 미국

1970년대 급증하기 시작한 미국이민은 1985년과 1987년 사이 연 3만 5천명을 기록하면서 피크를 이루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1991년부터 1998년 사이 13만 6천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또한 해외이민을 갖던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역이민도 199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마다 1-2천여명에 불과하던 미국으로부터의 역이민이 1990년대 들어서 5천명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고용시장이 불안해지자 장래가 불안정해진 30, 40대의 전문직, 사무직의 해외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들은 해외이민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지역도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영어열풍에 힘입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조기유학이 급증하여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유학생만 10만명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은퇴 후 동남아 등지로 떠나는 은퇴이민도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재미 한인인구는 1,076,872명으로 실제 한인인구의 절반에 그친다. 이는 한인 인구의 반수만이 처음부터 이민을 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비영주목적으로 미국에 갔다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⁵⁴ 최근에는 처음부터 이민을 가는 사람은

⁵³ 파산한 총련계 신용조합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실제 채무자인 총련을 상대로 제기한 627억엔 지급요구 소송에서 동경지방법원은 2007년 6월 18일 총련 측에 청구액대로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가집행도 인정하였다.

연 7천-8천명에 머물고 있다.

미국동포들은 대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직업, 종교, 여가 등을 이곳에 의존하는 등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미국 주류사회와 문화와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⁵⁵

<표Ⅱ-2> 국가별 재외한인 변천사

	1910년	1930년	1945년	1949년	1991년	2005년
중국	10만	60만	165만	111만	192만	243만 (192만)
일본	3천	30만	230만	60만	69만	90만 (28만)
러시아CIS	5만	18만(1937)	20만	20만	44만	53만
미국	7천	8천	3만	3만 5천	141만	208만 (107만)
기타	유럽 11만, 중남미 10만, 아시아 25만, 캐나다 19만
합계					500만	660만

* ()안은 거주국 국적자의 수

출처: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서울: 외무부, 1988);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⁵⁴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p. 209.

⁵⁵ 위의 책, p. 213.

III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가.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⁵⁶ 첫째, 세계화시대 경제·문화적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냉전 붕괴이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한민족 역시 국내외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내의 한인들이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국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넷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열기를 증진시켰다.

나. 다양한 정체성

한민족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별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CIS 등 국가별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거주국에 동화되어 가면서 독특한 정체성을

⁵⁶ 정영훈,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2002), p. 12.

유지 발전시켜왔다. 심지어 중앙아시아와 같이 동일한 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도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⁵⁷ 예컨대, 이주 1세대와 이후 세대 간에는 정체성 보존과 현지동화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거주국 정부의 동화정책과 다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정체성 보존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이주할 시기의 모국 문화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인사회는 유사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족 정체성은 현재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70, 80년대 미국에 이주한 한인사회 역시 정체성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거주국의 시민권을 갖은 사람과 영주권만을 가진 사람 간에도 이질감이 존재한다.

특히,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CIS와 일본 등에서는 기존의 한인들과 새로운 이주자간에 정체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이민 3, 4세로 진입한 중앙아시아의 경우, 기존의 고려인 사회와 독립이후의 이주자 사이에는 별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반면, 새 이주자들은 러시아어에 서툴고 한국어를 한다. 이들의 경제생활, 음식문화, 문화생활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들은 『고려신문』을 읽는 반면, 한인사회는 『국민일보』 등을 읽는다. 일본에서도 기존의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⁵⁷ 이종훈, “한민족 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호 (2002), p. 69.

수 없으며, 이들은 소위 뉴커머들(New Comer)과 별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다.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현상

이처럼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이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한민족 동포사회가 점차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체제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사회는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나,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일한인 1세대와 달리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민단계 청장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민단계 젊

I
II
III
IV
V
VI

은 세대들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직기반의 침화에 따른 조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민단계 민족학교는 재정난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으며, 민족교육의 침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중국의 한민족 사회도 최근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의 탈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내 한민족 20-30대 여성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시집을 떠나, 조선족 마을의 미혼 청년 남녀의 성비가 20 대 1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 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닌 중국인 혹은 러시아인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한인들(특히 민단계 한인들) 역시 일본에 귀화하고 싶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매년 1만 7천명씩 귀화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정체성 약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한인들은 선진국에 산다는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이민 1세대가 많고 언어,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미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타운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연속극, 영화, 뉴스를 꾸준히 보면서 높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시민권 취득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라. 민족정체성 및 한인 사회 동질성의 국가별 차이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족 정체성 및 한인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한인 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반면, 미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민 1세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으나, 이민 2세, 3세로 가면서 급격히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민 2세의 경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민 1세와 2세간에 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동시에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생각 역시 매우 강하다.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민족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일본의 한인 사회는 좌우로 나누어져 대립하여 왔다.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재일 한인사회의 좌파세력을 재결집하여 등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복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면에서 민단보다도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총련은 일본의 정계와의 관계도 공산당의 범주를 넘어 그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내부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화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인의 반발, 북한 지상낙원론의 붕괴 등과

I
II
III
IV
V
VI

더불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 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일본내 한인사회는 일본사회의 차별대우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한인 신분을 숨기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이민 1세대들과 달리, 이민 3, 4세대들은 한국어도 전혀 하지 못하며 일본으로 귀화하여 완전히 한인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재일교포의 귀화가 매년 일만명에 이르고 있는 데, 이는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⁵⁸ 첫 번째 부류는 결혼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이다. 재일교포의 85%가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2세는 모두 일본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일본인의 경우에만 일본국적이 부여되었으나, 이제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일본인이라도 일본국적이 부여된다.⁵⁹ 두 번째 부류는 총련계 일부가 조선적으로 사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원치도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부류는 취업 등 사회생활의 편의를 위해 귀화하는 경우이다.

러시아 한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모국어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러시아화를 거쳤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인사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뿐만 아니라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민족정체성은 가장 약하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

58. 박영철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오사카지방본부 부단장과의 면담, 2007년 5월 11일.

59. 교포 간 결혼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2%는 기타 외국인과의 결혼이다.

들면서 한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덕분에, 조선족 사회는 모국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으며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결혼도 대부분 조선족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중국 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 지역으로 남아있다.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은 중국 전역에 분산된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서 여기서 한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어로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중국 내 한민족의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1996년 중국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연변대학은 해외 한민족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1958년 9월에는 장백조선족 자치현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에 8개의 자치진과 34개의 자치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동북 3성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산해관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조선족 총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해외 노무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한국, 러시아, 일본, 리비아, 사이판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해외노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선족은 20여만 명에 달한다. 중국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 사회·경제적 지위의 국가별 차이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I

II

III

IV

V

VI

현저히 나타난다. 미국의 한민족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은 정치적으로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진출하고 있으며, 학계나 경제계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일본 동포들의 경우 자영업으로는 식당, 오락업, 철공업, 유리공업, 비닐화학공업, 잡화상, 식품점을 주로 경영하며, 이외에 사무원, 단순노동자, 판매업 종사자, 운수통신업 종사자가 많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탈세, 야쿠자 연루 등 부정적 이미지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본정부와 지방참정권, 지문날인 등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다.

중국 한민족 사회에서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많다. 중국의 한민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자본의 동북 3성 진출과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상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해, 북경, 청도 등지에도 조선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고 있다.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체류하는 조선족의 수도 상당수가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한민족 사회에서는 주로 농업과 상업 종사자가 많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초기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가 동요하면서 연해주와 기타지역으로 재이주하는 한인의 급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기존에 무엇을 했던 간에 연해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법적 문제와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이주 고려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매우 낮다.

2. 통일관련 특성

가. 이중 정체성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에 동질감을 느끼는가의 문제이다. 남과 북 어느 쪽에 더 동질감을 느끼는 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외동포들은 대부분 남과 북 양쪽에 정체성을 갖고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공산권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남한과 서신교환, 방송청취를 하는 등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로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다. 냉전 이후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고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으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남한과의 정체성이 강해졌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하고 한류열풍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정체성이 북한보다 강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일본내 한인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과거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약화되었다.

거주국 국민으로서 해외 동포들은 현지사회에 동화되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언어, 문화 등에 있어서 현지 적응도를 높여야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인들은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적 자각이 지나칠 경우, 현지사회에

I

II

III

IV

V

VI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의 경우 부유층의 이민 2, 3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백인동네에서 자라고 사립학교를 다니며 자신들을 소수민족이 아닌 백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으며 소수민족임을 자각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학생회에 가입하여 한국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다.

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해외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 지라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⁶⁰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는 재일동포에 비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도 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참여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본에 비해 거주국의 눈치를 보다 많이 살피게 될 것이다.

한민족 정치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흔히 제기되는 재외 동포 참정권 문제도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민족분열 행동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내 한인사회를 완전한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행동이 다른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적 민주화가 발전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참정권에 보다 적극적이다. 재일교포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⁶⁰ 이종훈, “한민족 공동체와 한국정부의 역할,” p. 72.

살면서도 조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조국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조국의 재외동포정책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⁶¹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와 달리 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이 경제적, 법적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 고려인들은 민족정체성이 가장 약하며 연해주를 떠나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중국의 한인사회는 민족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위해 체류와 방문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모국과의 관계

재외동포는 모국과 분리되어 살면서 생긴 이질성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조국에 대한 불만은 재외동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나 불만의 내용은 각기 차이가 있다. 중국 동포는 국적문제와 국내 취업문제로 인한 차별문제로 인해 남한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동포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남한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는 남북관계 이상으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남북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다. 재미동포 등 서방세계의 동포사회는 대체로 보수적인 대북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내 민단계와 재미동포사회는 남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보다 북한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

⁶¹ 1960년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은 자기 고향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도 한국정부에 기증하였다. 박영철 재일본 대한국민단 오사카지방본부 부단장과 면담, 2007년 5월 11일.

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사회는 한국사회와 묘한 경쟁 심리를 갖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한국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해 모국은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타향살이에 대하여 동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병역 기피, 재산도피, 조국을 버린 자들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재외동포 사회는 시기별로 상이한 통일 역할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 동포는 분단초기 및 한국전쟁시기 북한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한국과 수교이후 대개역할 내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중국동포는 북한의 식량난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일동포는 남북한 지지로 분단된 상태에서 총련계 재일동포가 50년대부터 노동력과 기술의 제공, 투자, 송금 등을 통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나, 재일동포사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재미동포는 80년대 중반 이후 대북지원과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냉전 이후 인도적 지원확대와 방문 등을 통해 북한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중앙아시아는 독립후 민족주의로 인해 고려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독립후 국제문화협회를 설립하여, 140개에 이르는 민족협회를 관

리하고 있다. 소련시절 소수민족협회는 10개에 불과하였고,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없었으나, 독립후 국제문화협회를 통해 소수민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소련시절 고려인은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렸으나, 독립후 한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에서 한국교육원 등을 통한 지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 문화·언어 강사 파견 등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세종한글학교와 같은 사설학원이 한국어 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민족간 공존을 허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화민족에 융합을 하려는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의 대가정’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² 중국은 조선족을 위하여 연변자치주를 설치하고, 한국어 교육, 문화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한국정부의 간섭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의 한국교육원에 대하여도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외 교포 중 정주국과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은 재일교포일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지문날인, 공무원 임용, 지방참정권 등 일본 정부와 인권문제와 차별대우를 둘러싸고 일본과 끊임 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사회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삶과 성공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총련계 교포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극도의 적대감마저 갖고 있다.

미국은 1960년 흑인 민권운동이후 인종차별적 법률을 파기하고 다문

⁶²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http://blog.naver.com/goodaylee?Redirect=Log&logNo=120019281170>> (검색일: 2007.8.3).

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사회에서 인종과 종족성은 사회적 지위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⁶³

⁶³ 이재협, “미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현주소,” <<http://blog.naver.com/chitml?Redirect=Log&logNo=30009541957>> (검색일: 2007.8.3).

IV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가. 재외동포의 개념

남한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성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포함하지 않게 됨으로써, 재중, 독립국가연합, 재일동포 등 전체 재외동포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배제되게 되었다. 결국 동 법안은 2001년 11월 20일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의 입법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IMF관리 체제하에서 재외동포들의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강하였다.⁶⁴ 이러한 목적하에 미국 등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었다.

2004년 3월 5일 개정된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총련동포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

⁶⁴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탈냉전기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04), p. 62.

I
II
III
IV
V
VI

도 거주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 외국에 체류 내지 영주하는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20만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아와 미군 혹은 군속과 결혼한 한국 여성 및 그 후손들도 재외동포에 포함된다.⁶⁵ 이와 같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적게는 560만명에서 700만명까지 차이가 난다.

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2004년 11월 8일 개최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는 ①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 강화, ②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으로 정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주요정책방향으로는 ①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② 거주국내에서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지원, ③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지원, ④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⑤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국가별 교포사회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중점 지원사항을 정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현지 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목표로 ① 미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의 역량 강화, ② 타인종, 타민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모범적이고 친화력있는 이

⁶⁵ 이광규,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연다』 (서울: 백산서당, 2002); 이진영, “북한개방과 발전에 있어 재외동포의 실 질적 역할 모색,” p. 220에서 재인용.

민집단의 구성, ③ 기회의 땅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기회의 땅에 봉사함으로써 모국과 거주국간 호혜적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법적 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를 목표로 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단-총련과의 관계개선 도모 및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② 차별 없는 민주사회 형성을 위한 지방참정권 획득 등 법적·제도적 지위 상승, ③ 한국어, 국사교육 강화를 통한 자부심 배양, ④ 귀화자의 포섭을 통한 미래지향적, 열린 동포사회의 형성 지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비정치분야 (경제, 교육, 문화분야) 교류 증진을 목표로, ① 한·중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간 협력자로서의 재중 동포사회 지원, ② 통일후 동북아 평화질서유지를 위한 재중동포의 건설적 기여 육성, ③ 한·중 통상진흥과 인적·문화교류 향상에 활용되는 역동적인 동포상 구축, ④ 원활한 출입국 및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러시아·CIS는 한국어, 전통문화 보급 및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① 거주국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지원 병행을 통한 고려인 보호·육성 도모, ② IT 분야등 기술연수사업을 통한 동포초청사업 확대 추진, ③ NGO와의 연계를 통한 민관합동 지원체제 구축,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재외동포정책 변화과정

1950년대 말까지 남한의 재외동포정책은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재외동포는 대부분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에 살고 있었고, 일본의 재일동포 역시 조련계가 압도하고 있었다. 1955년 일본에서 총련이 결성되자 한국정부는 재일동포의 방문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I

II

III

IV

V

VI

1961년 5.16 이후 비로소 재외동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정부는 외무부 정무국에 교민과를 신설하고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의 목적은 해외이민을 장려하여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었다.⁶⁶ 그러나 여전히 재외동포는 재일동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재외동포정책 역시 이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1965년 재외동포의 수는 사회주의권동포들을 제외한 채 65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60만 명이 재일동포였다.

정부는 북한의 총련지원에 맞서 1960년대부터 재일교포들을 위한 민족교육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1963년 한국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반공교육 및 친남한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1974년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의 친북성향을 차단하고 남한을 지원하도록 지원하였다. 1977년부터 매년 10억엔을 민단중앙본부 및 지방본부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근대화 정책에 따라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일동포사회를 활용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였다. 예컨대, 재일동포모국방문추진위원회,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재일투자금융회사 등을 통해 본국 투자를 장려하였다.

1980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 10월 개정헌법 제2 조에서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재외동포정책은 재일동포사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는 재일동포사회의 수적인 확대와 경제적 성공을

⁶⁶ 윤인진,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한국사회』, 제6집 (2005), p. 49.

들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 교민청 신설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국민정책심의회」가 발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목표는 ‘북미지역 교포사회내 제2 조총련 세력형성 방지 대책’과 ‘재미한인 교회 및 교포 언론 선도대책’과 같이 친북화와 반남한화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1991년 냉전의 종식은 재외동포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1988년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시작한 한국은 1990년 소련과의 수교,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까지 중국과 소련의 교포는 재외동포에 집계조차 하지 않던 정부는 1991년 『외교백서 1991』에서 중국 192만명, 독립국가연합 44만명을 공식적으로 재외동포에 포함시켰다.

88올림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과의 유대가 강화되어, 분야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제1회 세계한민족체육대회’가 개최되어 50개국 1,326명이 참가하였다. 1990년에는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제2회 대회부터 세계한민족체전으로 변경되어 격년제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후반들어 과학분야에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200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경제분야에서의 네트워크는 다른 분야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70년대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재미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1981년 세계해외한인 무역협회(OKTA)가 정부의 후원하에 결성되었다. OKTA는 1996년 ‘KOREAN NETWORK 추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화경제권과 같이

I
II
III
IV
V
VI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2002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제1차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실질적인 한민족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⁷

1990년대부터 민족교육의 대상에 사회주의권 동포가 포함되었으며,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심지어 현지인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교육기관은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전일제 한국학교’는 국내학교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며, 14개국에 24개교가 있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무료이다. 14개국 35개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글학교는 교회 부설 혹은 사설교육기관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가 현지인 중 엘리트층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세종학당을 구상하고 있다.

1995년 외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발전된 데 이어,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공식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재외동포업무가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의 소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⁶⁸

1998년 재외동포재단은 중장기 사업목표로 ① 재외동포지원을 통해 민족정체성과 민족유대감을 높이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한다. ②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국 정착을 지원한다. ③ 국정과제의 하나인 재외동

67-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p. 93.

68- 위의 논문, p. 40.

포는 우리의 국력에 부응토록 국가발전에 재외동포 참여를 확대한다.

④ 장기적으로 세계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2007년 재외동포법에서 소외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이들 동포들에게 3년 체류할 수 있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하여 이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체 불법체류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들의 불법체류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방문취업제(H2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이 부여되어 타지역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⁶⁹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헌법불일치 판결하고, 입법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2.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가. 재외동포의 개념

북한에서 재외동포는 크게 법적인 정의와 정서적인 정의의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민족’은 민족개념에 대한 스탈린

⁶⁹ 방문취업비자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H2 비자는 중국 교포를 주로 배려한 것이며, 돈도 없고 한국어 능력도 떨어지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한국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싼 값에 배를 타고 한국에 갈수도 있고 언어문제도 없다. 직장도 없고, 연고도 없이 비자를 받으면, 결국 브로커들이 개입해 직장을 알선할 것이다. 한국에 간다는 기약도 없이 돈을 준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 김 부르트 고려신문 사장 인터뷰, 타쉬켄트, 2007년 7월 18일.

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발행된 『조선말사전』에 의하면,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 위에서 발생된다는 스탈린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64년의 『대중정치용어사전』에서는 민족은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체계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족의 개념은 80년대 들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통일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⁷⁰ 1985년판 『철학사전』은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까지 김정일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자로서 인식되기를 거부하였다.⁷¹

북한 ‘민족주의’의 본격적인 출범은 1990년대 들어서 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 김정일은 민족의 기본징표로서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서도 언어와 피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피줄과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라 할 수 없고, 해외에서 살아도 동포들은 다 같은 조선민족이라고 말하였다.⁷² 따라서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 등 4가

70.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p. 239.

71. 위의 글, p. 244.

72. 스탈린이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 등 4가지를 민족의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김정일은 반박하면서 민족의 기본징표로서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서도 언어와 피줄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주장은 1960년 논문에서

지를 민족의 기준으로 삼은 스탈린의 입장은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즉, 김정일은 민족이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의 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⁷³

북한에서는 우리의 재외동포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단일의 용어는 없고, ‘해외조선공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예컨대, 일본거주 동포를 지칭할 때, 북한의 문헌에서는 ‘재일 조선인,’ ‘재일 조선공민,’ ‘재일 동포,’ ‘재일 조선동포’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해외조선공민은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다니며 살다가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떳떳한 공민이 된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조선공민의 자격과 외국적 취득여부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헌법은 재외동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1963년 공포된 북한의 국적법 1조 1항은 북한 국가수립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헌법에 의하면 중국이나 소련의 교포들과 같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조선공민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헌법 62조는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총련과 같은 해외동포조직은 전위조직이나 행정조직이 아니라 대중적인 정치단체이다. 즉 사상단체이며 공민단체이며, 혁명적 조직이다.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1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⁷³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7.

I
II
III
IV
V
VI

나. 재외동포운동의 원칙과 목표

김일성은 재외동포운동의 원칙으로 다음의 4가지를 천명하였다.⁷⁴ 첫째,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원칙이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영도가 없 이 분파가 있게 되면 해외운동이 사분오열하게 되어 결국 파멸하게 된다. 둘째, 주체 확립의 원칙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해외교포 자신이 해외교포 운동의 주인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 요구와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셋째, 단합의 원칙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합법성의 원칙이다. 해외교포 조직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해외교포 운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거주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국 정부에게 탄압의 구실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북한에서 해외동포운동의 목표는 민족적 운동, 애국적 운동, 통일운동 세가지이다. 김일성은 재외동포운동을 ‘민족적애국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해외동포운동은 해외동포들 자신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는 민족적 운동이며,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는 애국적 운동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⁷⁵

민족적 운동은 거주국의 민족적 멸시와 차별, 억압을 받음이 없이 자주 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의 모체인 조국의 공민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 조국의 공민권

⁷⁴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8: 해외교포문제 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p. 63-83.

⁷⁵ 위의 책, p. 31.

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운명을 지켜 줄 조국이 없는 고아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둘째,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외국에 살면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거주국의 동화정책이 가열되면서 정체성(민족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기업권, 귀국과 조국에로의 자유왕래의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 재외동포하면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기본인식이 재외동포와 거주국간의 적대관계를 가정한다. 다만 해외교포들이 거주국 정부가 아닌 거주국 인민들과는 친선을 도모하고 여러 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이루어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애국적 운동은 해외동포들이 어디에 살든지 자기의 생명의 모체이고 운명의 보호자인 어머니 조국의 자주적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이고 도리이다. 해외동포들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하며 자기나라 혁명이 아닌 거주국의 혁명에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파사대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재일 조선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은 재일 조선상공인들과 모든 재일 조선동포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된다.”고 말하였다.⁷⁶ 외세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되면 해외동포의 민족적 자주성 역시 침해되는 것이므로 조국을 떠나서는 해외동포의 참다운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⁷⁶ 김일성, “재일 조선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1973.11.19),”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00.

I
II
III
IV
V
VI

끝으로 북한 해외동포운동의 세 번째 목표는 자신의 통일방안을 지지·선전하는 활동에 해외동포들을 적극 동참시켜 북한의 주도하에 조국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목표는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하면서 보다 적극화되었다. 북한은 동제안에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가 남북 동수의 대표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될 것을 주장하였다.⁷⁷ 통일정부에 재외동포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은 통일운동의 권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둘러싼 남북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재외동포정책의 변화과정

북한의 재외동포운동은 중국의 동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북한은 해방초기 연변에 교과서를 보내고 교사를 파견하고 연변대학의 창립에 도움을 주는 등 민족교육을 지원하였고, 연변의 우수한 인재를 사회주의 건설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북한군 강화를 위해 조선인부대를 귀국시켰다.⁷⁸ 그러나 해방이후 중국공산당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북한정권 성립과의 연결로 인해,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재외동포정책에서였다.⁷⁹

77- 1973년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 시,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문제들을 다룰 최고민족회의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960년 연방제 제안시에도 경제, 문화문제를 다룰 최고민족위원회는 남북정부의 동수대표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78-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총병력 20만명 중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병사는 4-5만명이었다. 손기만,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17, 56.

79- 이진영, “북한개방과 발전에 있어 재외동포의 실질적 역할 모색,”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2권』, (서울: 통일부, 2002), p. 234.

해방초기부터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북한국민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상, 한국전쟁 시까지 북한의 재외동포운동이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에게 본격적인 재외동포운동은 1950년대 재일동포운동에서 시작되었다.⁸⁰ 1954년 8월 30일 북한의 남일 외상은 재일동포를 북한의 국민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후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이었다. 1955년 일본에서는 일본공산당과 단절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한덕수의 노선에 따라 총련이 결성되어 북한의 하부조직화 하였다. 북한은 총련을 통해 북한지지운동, 남한정부 반대투쟁, 민족적 권리 옹호투쟁, 민족교육 지원정책, 조국으로의 자유왕래실현운동, 북송사업, 조국통일운동, 대중교양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⁸¹

1950년대 재일동포운동 중 가장 주목할 일은 민족교육지원과 북송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총련의 교육 사업은 재일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님을 심어주고 그들이 일본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민족재생운동”이라고 말하였다.⁸² 1957년 4월 1억 2천만엔의 지원금을 보낸 이후 1999년 9월까지 42년간 145차에 걸쳐 441억엔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1956년 16개 학교가 신증축 되었고, 조선대학교가 창립되었다.⁸³

⁸⁰ 북한에게 재외동포운동은 재일동포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조국이 해방된 것과 같이 일본에 남은 재일동포들도 해방된 조국의 국민으로서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1945년 10월)하는 데 관여하면서부터 일찍이 시작되었다.

⁸¹ 손기만,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p. 19.

⁸²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80.

⁸³ 조선인 학교는 일본 문부성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는 일조교와 달리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검정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북한은 재일동포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재일동포의 귀국을 구상하였으나, 전쟁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1955년 재일동포의 귀국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재일 한인들의 ‘간절한 귀국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1959년부터 시작하였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155차에 걸쳐 88,611명이 귀국한 후 일시 중단되었던 북송사업은 1971년 재개되었으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북한의 실정이 알려지면서 이후 북송인원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북송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총 9만 3천명이 북한행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화한 재일동포는 귀국시 가지고 간 재산을 바탕으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으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는 등 북한의 주류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북한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이자 북송사업을 중단하고 이후부터는 통일정책에서 교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60, 70년대에는 일본이외의 지역에서도 총련을 모델로 해외동포들을 조직화하고 동포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남한정부 반대운동과 북한지지도운동, 통일운동 등 정치적 운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7년부터 총련으로부터 ‘애국공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하여, 김일성·김정일 생일기념 축하사업, 북한 건국기념사업, 총련결성기념사업, 조선로동당 창립기념사업, 조국사회주의건설 지원사업 등을 명목으로 모금을 하였다. ‘애국공장사업’은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업이 아니라 총련 상공인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기부로 간주되었다. 결국 공장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한 이후 해외교포운동



의 중심은 조국통일운동이 되었으며, 아울러 경제침체로 인해 해외동포 들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주요한 목표였다. 1984년 북한은 합 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제도상의 불완전성과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경직 성, 비우호적인 주변 환경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패하 였다. 해외투자유치의 어려움속에서 북한은 총련 상공인들의 투자유치 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 2월 28일 총련상공인의 대북 투자를 권고하는 ‘강령적 교시’를 하였고, 이후 조선과 조총련간의 조·조경제협 력과 교류가 활기를 띠었다.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총련합영사업추 진위원회」가 1989년 50 대 50의 출자로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하였다. 총련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애국심 뿐만 아니라 일본내에서의 중소기업 인의 지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기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찾으려 고 하였다.⁸⁴

합영법 발효후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북한내 투자의 118개 사업중 101개인 90%가 총련기업이었으나, 총련기업의 자본의 취약성으로 북 한이 원하는 철강, 전기, 중화학공업 등 기간사업에서는 합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01개 총련투자유치 중 1,000만불 이상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였고, 500만불 이상 기업이 30여개 였으며, 나머지 대 부분 기업은 100만불 내외의 소규모 투자였다.⁸⁵

조·조 합영사업은 90년대 초반 북핵문제로 인한 북·일관계 냉각과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으로 인해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합영 사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그릇된 인식과 사장경제에 대한 무지가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합영사업은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이라 는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당국은 ‘애국공장사업’과 같이 총련상공인의

⁸⁴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p. 136.

⁸⁵ 위의 논문, p. 138.

애국심에 기초한 기부로 간주하면서 단독경영으로 운영하였다. 더욱이 경제논리 보다는 공장당위원회 중심의 정치논리에 의한 경영방식으로 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의 차질,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 시설 미비, 터무니 없는 임가공비 요구,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비자발급의 불편함 등은 합영사업의 장애요인이었다.⁸⁶

1961년 설립된 조은동경신용조합(朝銀東京信用組合)이 각지에 설립한 지점을 통한 총련상공인의 대북송금도 1980년대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시 각지의 조은신용조합이 파산되거나 합병되었다.

중국과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접경지역에 다수의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중국당국이 자국의 변경지역들이 인접국들과 원활한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증가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변경무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다가 1982년 재개되면서 급성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은 실리위주의 정책을 띠게 된다. 이전까지 반남한단체 조직 등 정치적 목적에 주력하였던 북한의 재미, 재일동포정책이 경제적 지원확보로 선회하게 되었다. 재미동포 중 북한의 가족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북한은 이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주택과 직장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상선전 교육을 시킨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적대군중에 속하는 사람들로

⁸⁶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p. 142.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비참한 생활로 돌아간다는 두려움으로 당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재미교포가 방문하게 되면 이들로 하여금 체제선전을 하게하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요청한다. 1991년 김일성이 재미동포들의 방북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한 이후, 가족상봉, 선교 등의 목적을 갖고 ‘조국 방북단’의 형태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재미동포 방북단은 정보의 유출과 북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1996년 이후 중단되었다.

사회주의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별다른 정책을 펴지 않던 북한은 1980년대 후반이후 이들 교포사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주의권 거주 교포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자, 북한의 재외동포운동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에 적극적으로 친북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재중총련)가 결성되었고, 1998년 재중조선인총연합으로 확대재편 되었다.

소련에는 조소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재소동포에 대한 조직화에 착수 하였으며,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알마티와 타쉬켄트에 ‘조선통일촉진 위원회(아소크)’를 결성하여, 한글교과서, 김일성 회상기, 북한체제 선전 자료들을 보내기도 하였다. ‘조선통일촉진위원회’는 1993년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로 개칭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 결성되었다.

1995년 수해로 식량난이 심해지자 북한은 각국의 동포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미국내 친북조직인 ‘미주동포전국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통제되었던 중국동포들의 북한방

I
II
III
IV
V
VI

문도 다시 재개되었다. 중국동포들은 보따리 장사와 북한친척돕기운동 차원에서 옷가지, 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⁸⁷

한편, 지방 참정권과 공무원 채용 권리 등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요구에 대하여 북한은 1993년 11월 총련 중앙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조선민족의 한구성원으로서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에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국과 민족으로부터 떨어져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권리라도 얻어 살자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비판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해외동포운동은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총련에 대한 교육원조비가 중단되었고, 사회주의권 해외동포들의 초청사업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비교

첫째, 법적인 의미에서 재외동포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남한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재외동포에게 북한국민의 지위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국적법에 의하면 “북한국가수립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재외동포를 공민으로서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공민으로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혈통에 기반한 재외동포 개념을 바탕으로 적극적 동포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데 불과하며 실질적인 집행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⁸⁷- 손기만,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p. 66.

국민으로의 권한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나,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북한이 재일동포에게 공무원채용과 지방 참정권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재일동포들이 북한의 공민자격으로부터 떨어져 일본인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 ‘공민’인 총련계의 공유재산을 직접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⁸⁸

북한이 공민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폭넓게 정의하는 반면, 민족의 개념에 있어서는 혈통과 언어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해외동포들의 한민족정체성과 조국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결혼이 거의 없는 북한사회의 환경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 3, 4세대, 한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한민족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⁸⁹

둘째, 정책목표에 있어서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재외동포를 북한국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발전과 통일운동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으며, 70년대까지는 ‘기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남한의 재외동포정책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거주국 내에서 권익신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적 목표로 ‘세계

⁸⁸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p. 107.

⁸⁹ 윤인진,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p. 47.

한민족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남북대결 구도속에서 남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포사회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전개 했다가 보다는 남북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변경무역, 총련 상공인들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남한 역시 경제개발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많은 기여가 있었다. 즉 재외동포정책을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실리위주의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실패하였다.

남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은 상대방을 반대하고 자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냉전기 북한은 재외동포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두었고, 총련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에서도 반남한정부 조직을 구축하였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남한정부 반대투쟁을 억제하고 재외동포사회를 친남한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탈냉전기 남북한은 입장이 역전되어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사회주의권 재외동포사회가 남한정부와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남한정부는 일본과 같이 남북한 대결이 첨예하였던 곳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독립국가연합과 중국 등을 포함한 '새로운'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탈냉전기 재외동포정책은 사회·문화·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재외동포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경쟁과 관계가 있다. 특히, 남한을 미제의 강점하에 있다고 비판해 온 북한은 재외동포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하면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

의」에 남북 동수의 대표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가 포함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통일정부에 재외동포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 한반도 내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들의 조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재외동포들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은 조국과 동포사회의 유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번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남한 역시 북한의 공세에 맞서서 1980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평통은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칭되었는데, 국내외 1만 6천여명이 참여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과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담당기구는 최고 심의기관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는 업무 특성상 외교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이 거주국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경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재외동포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야기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재외동포업무는 당과 내각에 나누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당의 통일전선부이다. 통일전선부는 대남사업이나 대일관계와 같이 비수교국 외교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나, 산하의 해외담당과에서 해외동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전부 이외에도 35호실과 대외연락부가 해외정보 수집, 해외간첩 공작 등 해외동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⁹⁰

대외적으로 재외동포업무는 당 산하 조직으로는 「조선해외동포원호

I
II
III
IV
V
VI

위원회,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이 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관리와 총련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송금을 담당하고 있다. 아태는 미수교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인사의 방북초청 및 해외학술회의 참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조평통은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구축과 남한반대 투쟁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에는 『해외동포영접국』을 두어 방북 동포들의 안내와 관리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외무성은 재외동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보다는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⁹⁰-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p. 36.

V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1. 사례 연구

가. 중국의 재외동포정책

(1) 화교의 개념과 기원

전세계 화교 인구는 3,581만명으로 추산되면, 이중 80%가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731만명, 태국 636만명, 말레이시아 552만명, 미얀마 300만명, 싱가포르 268만명, 필리핀 100만명 등이다. 이 밖에도 미국 270만명, 러시아 100만명, 캐나다 90만명, 터키 40만명, 호주 37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7만명, 영국 25만명, 일본 24만명, 프랑스 22만명 등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다.

화교는 엄격히 말해서 화교와 화인으로 구별된다. 화교는 중국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이며, 화인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이 밖에도 화교, 화인으로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여 적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귀교(歸僑)라고 부르며, 화교, 귀교들의 본국 가족들을 교권(僑券)이라고 부른다.⁹¹

화교는 중화의식(대륙적 사고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데, 중국인의 후예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 토착민과 동화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인식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화교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자 보낸 서복(徐福) 일행에서 찾기도 하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화교의 형성은 16세기 초 서구의 동진에 자극을 받은 중국남부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⁹² 이들은 유럽 상인과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동남아 각지에 정착하

⁹¹ 배정호 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69-70.

⁹² 위의 책, pp. 63-66.

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중국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해외 이주가 급증하였다. 한편, 19세기 중반이후, 동남아를 벗어나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가 시작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화교는 하나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종족, 언어, 사회, 경제적으로 다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광둥인(廣東), 객가인(客家), 민남인(閩南), 조주인(潮洲), 해남인(海南), 산둥(山東)성 및 호남(湖南)성 출신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기본원칙

중국의 재외동포정책은 국가의 장기 전략과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화교와 화인은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고, 화인과 외국인은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등소평은 화교에 대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교의 주재국 국적 가입을 권유한다. 둘째, 중국 정부 역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셋째, 이중국적은 반대한다. 즉, 중국의 화교정책은 화교들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지지하나, 중국국적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제관계에 따라 화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3) 구체적 정책

① 화교 자본 유치

중국의 화교정책이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중국이 경제발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터이다. 1979년 등소평은 “현재 우리

가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방도를 찾아야 하며 외국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화교, 화인후예들이 중국 대륙에 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혁개방시기 중국은 건설, 통일대업 완성, 해외영향 확대, 국제 우호 인사 등 4대 부문에서 화교의 역할을 주목하였고, 특히, 3조 달러로 추산되는 화교자본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정부는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들의 중국 투자에 많은 혜택을 주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당국의 노력의 결과, 1978년부터 1993년 사이 중국에 대한 국외 직접투자 600억불 가운데, 70%가 화교자본이었다.⁹³ 투자와 함께 무역외 수지인 여행수지 역시 괄목한 만한 기여를 하였다. 화교 자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을 소유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화교정책목표 중 하나였다. 특히, 개혁개방초기 수요가 급증한 국제시장, 금융, 법률, 현대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력에 대한 영입이 요구되었다.

② 외교적 마찰 방지 노력

중국은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전개하면서도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 화교들의 절반이상이 이중국적이었으며,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간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중국은 화교는 정주국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화교들의 정주국 국적취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화교들이 정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정주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정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

⁹³ 정신철, “중국의 화교·화인정책과 그 특징,”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KIN, 세계한상문화연구원,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주최, 2004.9. 10), p. 120.

I
II
III
IV
V
VI

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⁹⁴

외국과 관계되는 일, 예컨대 거주국을 방문하거나, 교포의 현지 권익 활동을 파악하는 일은 전인대의 지도하에 지방인민대표대회가 담당한다. 이는 중앙차원의 의원외교가 초래할지 모르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세심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교에 대한 우대정책도 지방 및 실제정책에서 행정적으로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요컨대, 정주국과의 외교적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부의 업무와 화교 업무를 분리시켰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거주국에서의 생존과 발전 지원

중국정부는 화교들의 권익향상과 정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화교들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갖되,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즉, 지나치게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화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화교에 대한 직업훈련, 언어기능, 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교무영사를 파견하여 화교들의 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④ 화교업무 체제 완비

중국의 화교업무는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과 지방을 망라하여 조직되어 있다.⁹⁵ 우선 중앙차원에서는 국무원의 화교사무판공청이 총리를 보좌하여, 화교 사업의 방침, 정책, 법규를 연구 작성하고 집행, 감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화교위원회를 설치하여 화교관련 법률초안을

⁹⁴ 정신철, “중국의 화교 · 화인정책과 그 특징,” p. 115.

⁹⁵ 배정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p. 72.

제출하고, 실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교무판공실이 조직되어 있다. 교무판공실의 업무는 외교부를 협조하여 중국의 외국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지도하여 화교와 외국적 화인의 사업을 전개한다. 중앙과 각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는 화교사무위원이 설치되어 있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산하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교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78년 귀국화교대표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된 이래 화교연합회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⑤ 화교네트워크 구축

개혁개방 초기 화교자본은 주로 고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중국당국이 산두(汕頭)를 개방한 것은 동남아 화교중에 조주(潮州)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한 것이고, 하문을 선택한 것은 외국에서 사업하는 민남인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츰 화교들은 종족, 언어, 지방적 차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시작하였다.⁹⁶ 화교들의 네트워크는 중국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화교네트워크와 중국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1991년 제1차 세계화상대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2001년 6차대회가 남경에서 개최될 때까지 세계화상대회는 중국 밖에서 개최되었다. 남경 화상대회를 전후하여 중국은 화교 네트워크에 대한 소극

⁹⁶ 배정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p. 81.

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중화를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첫째, 중국의 화교정책은 개혁·개방이후 과거의 이념적 적대감을 버리고 철저히 실용주의적 정책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화교의 인적, 물질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외교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적절히 업무분담을 하였다.

셋째,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화교들이 정주국에서 성공적 정착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중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화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추구하였다.

넷째, 정부가 화교정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간주하며, 화교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

(1) 헝가리인 디아스포라의 기원

1차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에 가담하였다가 패전 한 헝가리는 베르사이유 조약의 부속 조약인 1920년 트리아농 조약(Trianon Treaty)에 의해 국토의 70%와 국민의 반 이상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⁹⁷ 헝가리 디아스포라는 이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⁹⁷- 베르사이유의 트리아농 궁에서 1920년 6월 4일 체결되었다.

국경이 움직임으로써 발생한 특이한 경우이다. 즉 자기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1920년 조약을 통해 하루밤 사이에 소수민족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은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

헝가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많은 외침과 정복의 아픔을 겪었다. 중세기 합스부르크와 비잔틴 제국에 눌러 지냈으며, 이후 오스만터키의 위협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헝가리 역사는 주변에 많은 민족이 얽혀 살고, 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민족의 존립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이 지역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간의 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 및 독자적 권한이 무시되었으며, 냉전기 소련의 통제와 동질적 이념 하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에서 민족분규가 발생하면서 헝가리 소수민족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재외 헝가리인은 275만 명으로, 주로 헝가리를 둘러싼 7개국(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에 흩어져 있다. 이중에서도 루마니아(150만명)와 슬로바키아 (52만명)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2) 기본원칙

냉전시기 계급문제에 가려 민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헝가리는 1989년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재외동포 정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후 ‘인접국 거주 헝가리 혈통자의 권익보호’가 헝가리 정부의 대외정책의 3대기조 중 하나일 만큼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⁹⁸ 헝가리의 해외민족정책은 재외동포들이 헝가리의 문화유산과

I

II

III

IV

V

VI

전통에 크게 기여하고, 헝가리의 지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며, 헝가리와의 관계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⁹

헝가리 동포정책 기조는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헌법 6조는 “헝가리는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헝가리의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로서 헝가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접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이다.

(3) 구체적 정책

① 인접국과의 양자 조약

헝가리는 인접국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국들과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조약이 루마니아와 1996년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동 조약에서 헝가리는 루마니아 영토내 헝가리인의 자치권 주장을 포기하고, 루마니아는 자국내의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를 인종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가 아닌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존중하도록 하였다.¹⁰⁰ 상호 양보가 가능한 것은 양국이 NATO 가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⁹⁸- 1990년대 국민여론에 바탕을 두고 정립된 헝가리 대외정책의 3대 기조는 이밖에 ‘유럽통합’과 ‘인접국과의 선린관계’이다.

⁹⁹-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oard* (2005.4.25), p. 1.

¹⁰⁰- *Hungary's Near Abroad*, <<http://www.ndu.edu/inss/strforum/SF-93/forum93.html>> (검색일: 2005.4.22), p. 3.

헝가리의 책임은 인권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적이며 유럽적인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강화되었다. 헝가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인접국들이 유럽연합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¹⁰¹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 소수민족은 유럽통합을 도모하고 민주적 가치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해외 헝가리인들의 운명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두가지 목표로 전환되었다. 첫째 목표는 인접국의 헝가리민족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 목표는 거주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들의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2년 『이해, 협력과 선린우호에 관한 헝가리-루마니아 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Hungary and Romania on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Good Neighborhood)』과 『헝가리-루마니아 전략적 파트너십과 21세 유럽을 위한 협력(Hungarian-Romanian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for Europe in the XXI Century)』 들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② 국내에서의 법적 정비(Statuslaw)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헌법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구체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01년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대한 법안 LXII(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ring Counties)』을 제정하였다. ‘Statuslaw’라 불리는 동법

¹⁰¹-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road* (검색일: 2005.4.25), p. 1.

안을 통해 헝가리 행정부처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헝가리의 ‘Statuslaw’는 인종적 기준에 따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헝가리는 2003년 6월 23일 개정안을 만들었다.¹⁰² 개정안에 따르면 헝가리인이기 때문에 지원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서 헝가리어를 배우거나 헝가리 민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혜택의 목표가 헝가리 민족임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Statuslaw’는 인접국 헝가리인이 헝가리 혹은 거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 1장 2절 1항에 따르면, “헝가리 공화국은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고, 헝가리인들이나 단체에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인접국 헝가리인은 문화, 과학, 교육, 고용 등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혜택과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의 공공 문화기관과 서비스, 문화재와 역사적 기념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가 보장한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헝가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내에서 여행하는 데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2등급 기차가 무료로 제공되고,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제한 무료 여행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년에 4회까지 90퍼센트의 할인요금

¹⁰² 헝가리 재외교포청 전략분석과 Andras Kiraly 과장과의 인터뷰, 부다페스트 재외교포청 사무실, 2005년 6월 21일.

혜택이 주어진다.

헝가리내의 대학교육, 박사학위과정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헝가리내의 교육을 위하여 온 인접국 헝가리인들에게는 체류비, 교통비 등을 정산해준다.

인접국 거주 헝가리인들이 거주국에서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 문화를 주제로 한 과목을 공부할 경우 책과 교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 정체성과 모국어, 헝가리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인접국 내의 기관에게는 보조금이 제공된다.

인접국 헝가리인들은 각종 혜택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헝가리민족카드(Ethnic Hungarian Card)」나 「헝가리민족의 가족카드(Family of ethnic Hungarian card)」와 같은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헝가리민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거주국에서 헝가리민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카드는 18세에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18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유효하며, 60세 이상이 되면 무한정 유효하다.

동 법안은 인접국 헝가리인들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이 거주국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로 이주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동 법안은 인접국의 헝가리인이 헝가리로 이주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헝가리민족카드」도 비자나 여권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2005년 4월까지 「헝가리민족카드」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우크라이나 100%, 루마니아 30%, 슬로바키아 20%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신청율 차이는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헝가리인 소수민족이 전원 「헝가리민족카드」를 신청한 데 비해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I
II
III
IV
V
VI

슬로바키아에서는 신청율이 낮았다.¹⁰³ 헝가리민족카드의 신청이 슬로바키아에서 특히, 저조한 이유는 혜택이 실질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 법안의 통과 이전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25%가 헝가리에 재이주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동 법안이 거주국내의 헝가리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헝가리로 재이주를 고려하는 수는 반으로 줄었다.¹⁰⁴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경우 「헝가리민족카드」와 관계없이, 헝가리 소수민족이 헝가리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헝가리민족카드」 발행 이전에도 슬로바키아의 헝가리인들은 슬로바키아의 현 거주지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⁰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가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중 국적제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해외헝가리민족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③ 거주국에서 헝가리소수민족의 정치 및 정부참여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정당들은 연립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정국안정에 기여하였다. 1989년 차우세스쿠정권 붕괴 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루마니아 헝가리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for Hungarians in Romania, DAHR)」이 결성되었다.

DAHR의 기본 정신은 보편적 인권, 개인적·집단적 소수민족의 권리

¹⁰³- 헝가리 재외교포청 전략분석과 Andras Kiraly 과장과의 인터뷰, 2005년 6월 21일, 부다페스트 재외교포청 사무실.

¹⁰⁴-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road*, p. 3.

¹⁰⁵- 슬로바키아의 헝가리 민족 거주지 코마로나(Komarona)시 부시장 Eva Horai 인터뷰, 코마로나시 청사, 2005년 6월 23일.

등에 대한 가치, 의회민주주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가치이다. DAHR은 지방 정부, 문화적·영토적 자치, 자결권 등의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AHR은 1990년부터 루마니아 선거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의회, 중앙정부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1996년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 결과 DAHR 출신 두명이 각료직을 맡게 되었다.¹⁰⁶ 2004년 대통령선거(5.1%)와 의회선거(하원 6.23%, 상원 6.17%)에서 DAHR은 모두 4위에 드는 결과를 이루었다. DAHR은 집권 사회민주당과 연정에 참여하여, 교육, 문화,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통신 및 정보 담당 장관 등의 각료직과 몇 개의 중앙기관장직을 차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헝가리인들은 정치적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1994년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에서 15석 중 헝가리 소수민족이 15석을 차지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지만, 헝가리 소수민족이 1998년 선거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헝가리 소수민족은 이념이나 정책 보다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투표에 임하는 강한 응집력을 보여 준 결과, 슬로바키아 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선거에서 SMK가 연립정부에 참가하여 인권, 소수민족,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부총리직을 비롯하여, 농업, 환경, 건설, 보건 등 4개부처의 장관을 맡는 정치적 성과를 이루었다. 헝가리민족이 전체 슬로바키가인의 1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SMK의 권력배분은 표의 응집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¹⁰⁷ SMK의 정치적

¹⁰⁶- *Hungarian Minority in Romania*, <<http://www.unpo.org/news-detail.php?arg=24&par=47>> (검색일: 2005.4.22), p. 3.

¹⁰⁷- 헝가리 재외동포청 슬로바키아과 Varadi Lajos 과장 인터뷰, 부다페스트 재외동포청사, 2005년 6월 21일.

I
II
III
IV
V
VI

영향력이 향상됨으로써, 민족적 차별이 완화되었다.

④ 인접국 헝가리소수민족에 대한 경제·교육·문화 지원

헝가리 정체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는 것이었으며,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1990년 헝가리어로 교육하는 독립적인 중등교육기관이 전무하였으나 2004년에는 58개 학교가 헝가리어로만 교육하였으며, 헝가리어가 있는 교육기관도 78개에 달하였다. 2003년 186,218명의 학생들이 헝가리어 유치원과 공립학교에 등록하였다.¹⁰⁸ 루마니아어 학교에 다니는 7천여명의 헝가리 학생들도 원하면 헝가리어와 헝가리 문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2만 5천명 이상의 헝가리 학생들이 대학교육 이상의 과정에 등록했다.

2001년 Sapientia-Hungarian University of Transylvania가 Csikszereda 캠퍼스에 설립되어, 사회학(농촌개발), 농업과 식량 경제, 회계와 IT, 루마니아어와 문학 등 4분야로 시작하였다. 2004년 Csikszereda에 1,036명, Marosvasarhely에 784명, Kolozsvar 87명이 등록하였다. 대학생들이 헝가리어로 대학교육을 받기위하여 헝가리에 유학을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는 1992년 코마로나(Komarona)라는 헝가리 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시에 헝가리의 많은 대학의 분교 역할을 하는 시립대학이 개설되었다. 2004년에는 헝가리 민족대학인 J. Seyle 대학이 개교하여 첫째 4백명을 선발하였다. 1998년 연정에 참여한 SMK의 정치지도

¹⁰⁸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Romania*, <<http://www.htm.hgov.hu/reports2004/romania2004.htm>> (검색일: 2005.5.2), p. 21.



자 중 한명에게 의회 부의장 자리가 제시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대신하여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J. Seyle 대학의 개교 지원을 약속받았다. 루마니아의 Sapientia가 사립대학인 데 반해서 J. Seyle은 국립대학으로 개교하였다.

보이보디나에 헝가리정부는 5억 헝가리화폐 기금을 조성하여, 헝가리 소수민족의 생활여건 향상을 기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호텔, 문화시설, 교회 등에 투자되었고, 헝가리와 세르비아간 사업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⑤ 재외헝가리동포처

재외헝가리동포처(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GOHMA)는 1992년 조직되었다.¹⁰⁹ 처장은 외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총리가 임명한다.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해외동포에 관계되는 정부부처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헝가리 소수민족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을 준비하고, 헝가리 소수민족 정책을 구성하고, 이 개념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가 해외 헝가리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부처들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두고 있으며, 해외헝가리동포처가 이들 부처의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의 각종 조직, 교회 등과의 유대 유지하고,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과 관계있는 헝가리내의 NGO 들과의 유대를 도모한다.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한다.

¹⁰⁹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소수민족처(Office for the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와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헝가리에 거주하는 13개의 공식적인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외교부장관의 감독하에 있으며, 85명의 직원이 5개의 지역과(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와 5개의 기능과(전략과 평가, 언론과 기록, 법·행정·인도적 정책, 전문적 협력과 지원 조직, 재무)에 나누어져 근무한다. 세 명의 비서는 각각 처장, 부처장, 헝가리상설회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시사점

첫째, 헝가리는 인접국 재외동포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자조약 등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둘째, 헝가리는 재외동포들이 헝가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장려하였다. 헝가리는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정착하고 성공하는 것이 헝가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하에,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았고 모국으로의 귀환을 원치않았다.

셋째, 헝가리 소수민족이 거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헝가리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혜택은 헝가리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넷째, 헝가리 재외동포들은 정주국에서 정치, 사회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였다. 헝가리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정책방향: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의 역할증진 방안

가. 기반구축 방안

(1)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 공동체는 전지구적으로 하나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개념은 민족공동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민족공동체가 한국중심이라면 수평적 네트워크는 여러형태의 세계속 한인들이 각지에서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면서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의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이다.¹¹⁰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은 각국의 헝가리인들의 협의체로서 『헝가리위원회(Hungarian Standing Committee)』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헝가리 민족의 발전을 목표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 단체는 1996년 부다페스트 첫회의에서 총리가 참석한 이래 헝가리 고위관리가 참여하고 있으나, 헝가리 정부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1991년 출범한 세계화상대회 역시 2001년 6차대회가 남경에서 개최될 때 까지 중국 밖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정부와 거리를 두었다.

즉, 재외동포사회는 한국이나 북한의 일부가 아니며, 모국이 중심이 되고 재외동포사회가 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의 공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¹¹⁰-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편, 『하늘길, 바닷길, 땅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p. 354.

건전하고 튼튼한 한민족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사회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각 거주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화교와 유테인과 달리 한인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분명한 세력으로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였다.¹¹¹ 중국의 조선족과 독립국가의 고려인들은 오랜 이주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독립적인 힘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재일교포들은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참정권도 갖지 못한 채 일본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미동포 등 서방의 동포들은 비교적 경제적 성공을 하였으나, 소규모 자영업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민의 역사가 짧아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적 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statuslaw)을 제정하여 각종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은 헝가리 소수민족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종적 기준이 아니라 헝가리어와 헝가리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국내에서 헝가리민족의 경제, 문화,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헝가리로 이주하고자 하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헝가리 정부가 인접국 헝가리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헝가리민족카드」나 「헝가리민족의 가족카드」는 헝가리소수민족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비자나 여권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헝가리로의 이주권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¹¹¹ 이진영, “북한 개방과 발전에 있어 재외 동포의 실질적 역할 모색,” p. 241.

해외 한민족의 경우,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등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에 대하여는,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 머물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 동포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 개념이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성공적 정착에 바탕을 둔 것이며 조국으로의 재이주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초기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통일 이후 남북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한유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력의 균형을 파괴하고 남한의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헝가리의 재외동포 정책에서처럼, 북한지역에 거주를 장려하고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억제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북한지역 거주자가 현지에서 경제적인 격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지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주민이 남한을 단기 방문할 경우 체류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 입장료 등을 면제해 줄 수 있다.

(2)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본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헝가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정부는 한민족 정책을 주요한 외교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헝가리는 인접국의 헝가리민족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들이 거주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수민족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주변국의 한민족문화훼손과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냉전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부는 ‘인종적 단일국가’를 표방하며, 자국내 헝가리문화를 말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헝가리 민족학교를 통폐합하고, 소수민족의 각종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헝가리민족이 떠난 집단민족 거주지에 루마니아인들을 이주시켜 정체성을 약화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냉전하에서 헝가리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헝가리문화가 상당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북아 국가 중 다행히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은 국가간 관계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재외동포 업무체제 개선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동포들의 거주국과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가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업무를 외교통상부업무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현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당장 어렵다면 대안으로 통일부가 재외동포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실 재외동포문제

는 통일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에 재외동포가 수평적 네트워크 개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 재외동포의 고국방문, 북한주민의 해외이주 등 많은 이동이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 문제도 통일부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외동포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다루기보다는 중국처럼 실무 차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여 다루는 것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나. 통일촉진 방안

(1)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정체성 유지 노력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증진하고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사회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 동포사회에 대한 포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와의 화합, 재외동포사회간 화합, 민족공동체에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한다.

우선 재외동포의 이념적 지향이 본국과 괴리를 좁혀야 하며, 거주국 교민간에는 통일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랜 냉전과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에 따라 대북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사회는 중간지대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민단과 총련이 분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미동포사회는 매우 보수적인 대북 성향을 갖고 있으나, 2000년 정상회담

I

II

III

IV

V

VI

이후 남한사회 유사한 이념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재러, 재중 동포들은 경제적으로 남한과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인 경향이 남아있다.

남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고, 재외동포들의 기여도 많았으나,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을 보다 신뢰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국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배려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은 형식적으로는 재외동포를 공민으로 간주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등한 대우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포의 북한내 정착 등에 대한 혜택도 없고, 거주국내에서의 정착을 지원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귀국재일동포를 북한경제에 기여만 요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²

즉, 재외동포의 역할과 통일에의 기여방안을 논하기 전에 통일과정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조국이 도와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친북성향이 있었던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관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외동포사회의 국가별 차이점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사회는 남북한 보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북분단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남북한 보다 오히려 이질감이 적다. 민족공동체 형성에 재외동포가 포함됨으로써 남북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육, 문화, 교육이

¹¹²- 2000년 이후 남한의 대북사업에 대한 태도 역시 재외동포정책과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의 정부, 기업인들, 지원단체 대표들의 친인척을 가급적 평양에 불러들여서, 후한 대접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남한인사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핵심 요소이며, 재외동포간 공동행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헝가리정부는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문화프로그램과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헝가리소수민족은 거주국내에서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문화를 주제로 한 과목을 공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수가 급증하였다. 실례로, 2004년 중등학교가 58개에 달하고 2십만 명의 학생이 인접국에서 헝가리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는 루마니아의 트랜실바니아 지역에 헝가리 민족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슬로바키아에는 2004년 역시 헝가리 민족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헝가리 소수민족이 헝가리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적극 장려되고 있다. 이들은 헝가리 여행시 2등급 기차 무료의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을 경우 체류비,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접국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문화보존이 본국에서 보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국의 헝가리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은 인접국 뿐만 아니라 헝가리 문화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도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의 경우에도 음식, 의상, 전통혼례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 문화가 국내 보다 더 잘 보존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등 한민족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은 정체성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I
II
III
IV
V
VI

도 정체성의 약화되면서 민족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에서도 한민족 사회가 탈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으로 최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07년 8월 15일 KBS 라디오의 사회교육방송이 한민족방송으로 개칭되면서 프로그램이 한민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한민족 하나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세계 한민족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거주국에서의 정체성 확보는 국가간 외교적 노력 못지 않게 거주국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헝가리 소수민족이 인접국에서 권리가 향상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신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2) 북한의 변화 유도

통일노력의 정의의 다양성은 어느 관점에서 통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변화에 대한 재외동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재일동포의 북한귀국, 1970년대 총련상공인의 대북투자, 1980년대 재중동포의 변경무역과 대북투자, 1990년대 재미동포들의 북한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방북이 있었다. 최근에는 7.1조치 이후 식량과 생필품 뿐만 아니라 남한 등 외부사조의 유입통로

가 된 중국 조선족의 역할이 북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북한의 조치로 교포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할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이전 갖고 있던 화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개혁·개방 기간을 거치면서 화교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과 달리, 북한은 초기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984년 합영법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안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 우대에 불과하였으며 구체적인 후속 행정지침이나 법제화가 따르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화교상인들의 적극적인 대중국 투자와 달리 북한의 요구에 상응하는 투자여력이 재외동포들에게 없었다.

즉 투자유치 초기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구별되는 개념이었으나, 1998년 헌법개정 이후 재외동포에 관한 조항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¹¹³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재외동포의 투자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해외동포의 투자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은 것 같다.¹¹⁴

북한변화를 위한 해외동포 역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컨대, 재중동포들은 변경무역과 보따리 무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공산품과 문화를 유입시키고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에 버스기사로서 북한의 개방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본의 총

¹¹³ 이진영, “북한 개방과 발전에 있어 재외동포의 실질적 역할 모색,” p. 221.

¹¹⁴ 위의 글, p. 237.

련동포들은 과거와는 다른 실용적이고 탈이념적인 태도변화를 통해 북한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재외동포정책과 대남정책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투자와 지원을 유치하려 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지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여건 마련에 주저하여 왔다. 북한은 재외동포의 투자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남한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의 투자보다는 재외동포의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약하다. 중국의 개혁초기 15년간 화교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퍼센트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체제의 평화로운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에 재외동포가 네트워크 개념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과정에서 재외동포의 고국방문, 북한주민의 해외이주 등 많은 이동이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다. 통일 미래상 정립

(1) 초민족적 국가 개념의 정립

역사적으로 민족국가의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의 세계는 초민족적 공동체(supra-national community)로 변모할 것이다.¹¹⁵ 초민족적 공동체는 미국사회와 같이 한 국가내에 여러민족이 공존하는 민족융합체(union of nations)와 화교나 유대인과 같이 하나의 민족이 여러국가에 흩어져 사는 범민족(meta-nation)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초민족

¹¹⁵ 한 발레리(다쉬켄트 동방학 연구소 철학과 교수), 2007년 7월 13일.

적 공동체는 인종, 문화, 언어의 공통성을 갖는 공동체이다.

한국사회는 두가지 차원에서 모두 초민족적 공동체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60만 명의 한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연인원이 천 2백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도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이중 22만명은 불법체류)을 넘어섰으며,¹¹⁶ 국제결혼 비율이 13.6%¹¹⁷에 이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다민족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⁸ 한국내 사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그룹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인식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 국가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통일의 방향은 변화하는 문화인류학적 환경과 한민족의 현실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과 함께 재외동포가 수평적 네트워크 개념으로 참여하는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거쳐 통일국가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족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하며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통일한국의 주요 참여자가 되는 ‘열린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¹¹⁹

¹¹⁶- 국내거주 외국인은 중국인 44만명(중국적 동포 26만명 포함), 미국인 11만명, 베트남 6만명, 필리핀 5만명, 태국 4만명 순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 2007년 8월 24일, 『동아일보』, 2007년 8월 25일.

¹¹⁷- 1990년 국제결혼은 1.2%에 불과하였다. 통계청 DB, 2006.

¹¹⁸- 『조선일보』, 2007년 8월 20일.

¹¹⁹-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 357.

(2)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고양

한국사회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제결혼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국제결혼 2세들의 교육과 사회화 장애로 소외계층화가 우려되고 있다.¹²⁰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말하기 전에, 코시안(Kosian) 이라 불리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혼혈인들의 초중등학교 중도 탈락율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혼혈인들의 탈락율은 10%에 이르며, 중학교에서는 17%로 이는 일반학생의 1.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6백 6십만명의 동포는 본국과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불만을 갖고 있다. 재미 동포는 반공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매우 강하게 유지하게 있으며, 재중 동포는 남한정부의 동포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고, 재일동포는 남북관계 이상으로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과정을 통해 화해와 개방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 문화적 한류와 한민족 수평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화해·개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일한국의 이미지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기 동포나 자국에 사는 외국인이 비판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통일을 계기로 폐쇄성과 단일민족의 울

¹²⁰ 혼혈아동의 초등학교 미진학율과 중도탈락율이 10%에 이르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17.5%에 이른다. 이는 중학교 중도탈락율 국내평균 1.1%에 비교하여 너무나도 높은 수치이다.

타리를 벗어나 개방과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 중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경기도의 안산과 수원, 서울의 영등포, 구로 등 16곳에 지방참정권의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별 『민족문화협회』의 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족문화협회』는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민에게 외국의 문화를 알리는 등 소수민족과 한국사회간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평화에 기여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지역은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이라는 전통적인 공유점 이외에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면 그 경제적인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 이 지역의 인구 합계는 15억 명이 넘는 규모로 세계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적 측면, 문화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EU나 NAFTA에 비해 큰 손색이 없어 향후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인문적, 문화적 인식의 공유점을 넓힐 때, 더욱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식공동체 내지는 문화공동체적 관점의 경제적, 국제정치적 관점과의 결합은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 및 열기의 증대와 이에 대한 지적 탐구의 시작은 21세기 국가 상호의존과 정보화 시대의 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조그만 단초

I
II
III
IV
V
VI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주관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동북아지역 국가의 각 구성원과 그 전체의 구조를 관통하는 규범, 제도, 문화 등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북아지역 국가 중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오랜 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공정, 일본은 위안부와 교과서 문제, 러시아는 권위주의체제로 인해 지도자로서의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공동체’의 개념과 그 구조가 담을 내용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각국에서 한민족의 권익확보와 정체성 신장은 거주국과 한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역문화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은 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유럽통합을 위한 정치적 힘의 역할을 하였다. 헝가리와 인접국들이 유럽연합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인접국 헝가리인들이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지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소수민족 권리침해에 대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가난, 식민지, 한국전쟁, 냉전 등 대체로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게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동포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전반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가 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통일이었다면,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는 한민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¹²¹ 해외의 한민족 사회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민족의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내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제·문화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¹²² 즉 각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재외동포문제를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재외동포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주변국의 역사왜곡, 동화정책, 차별정책 등에 강력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¹²¹ 정영훈,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정과 민족정체성 문제,” p. 11.

¹²² 위의 글, p. 9.

중요하다.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민족 네트워크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북한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노력에 앞서 국내적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에 걸맞게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강제 혹은 자발적이든,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서든, 이주의 동기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거주 당시 개인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고, 현 상황에서 남아있기를 선택한다. 이러한 의지와 욕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한민족 네트워크 구상의 기본이다.¹²³

이제 한민족의 개념은 한반도를 벗어나 한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세계한 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 재외동포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을 계기로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¹²³-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pp. 99-100.

참고문헌

1. 단행본

-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자료집』. 2004.
- 배정호 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7.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광규.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연다』. 서울: 백산서당, 2002.
- _____.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 _____.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서울: 일조각, 1994.
- 정인섭 편. 『재외동포법』. 서울: 사람생각, 2002.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 조정남 외.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서울: 집문당, 2002.
-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바닷길, 땅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서울: 다해미디어, 2005.

2. 논문

- 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1998.
- 김일성. “재일 조선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
바지하여야 한다(1973.11.19).”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
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1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_____.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
한인연구』. 10호, 2001.
- 반병율.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
집, 2003.
- 손기만.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 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 제8호, 1999.
- 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2004.
- 윤인진.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한국사회』. 제6집 2005.
-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동북아시아, 한
러관계와 고려인』.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
(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2004.10.

-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탈냉전기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중훈.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한민족간 교류협력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1999.
- _____. “한민족 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호, 2002.
- 이진영. “재외동포의 통일노력과 재중동포의 역할.” 남북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2007.
- _____. “북한개방과 발전에 있어 재외동포의 실질적 역할 모색.”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2권』. 서울: 통일부, 2002.
- 정신철. “중국의 화교·화인정책과 그 특징.”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04.9.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 정영훈.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2002.
-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39호, 2003.
- 차중환. “조국통일과 해외동포들의 역할.” 1997 일본 오사카 조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1997.
- 한경구.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일본.” 김인영 편.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 (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민족통합』.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001.

허명철. “중국조선족 집거구문제에 대한 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2000.

3. 기타자료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8: 해외교포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경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원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운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운,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설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	-----------------------------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인포레토로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브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동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락트레뜨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